

정책연구용역

지정 2011-27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의
방송통신 분야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2011. 12

연구기관 : 세무법인 한솔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 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의 방송통신분야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새로운 세제개편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세무법인 한솔

총괄책임자 : 추현재

참여연구원 : 이경천

박지혜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2
3. 연구의 한계	3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3
제2장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및 필요성	5
제1절 방송·통신업의 범위	5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사업의 범위	5
2. 조세법상 방송·통신업의 범위	7
제2절 방송·통신산업의 세제 지원 현황	10
1. 소비자(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현황	10
2. 공급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현황	11
제3절 다른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35
1.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세제 지원	36
2.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37
제4절 방송·통신산업의 세제 지원의 문제점 및 필요성	38
1. 방송산업 세제 지원의 문제점	38
2. 방송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	39
제3장 방송·통신산업 분야 세제 개선 방안	44
제1절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44

1. 종합소득 과세 체계	44
2. 소득세 공제체계	44
3. 소득공제의 필요성	49
4. 소득공제 개정안	72
5. 세제지원 효과분석	73
제2절 유료방송요금에 대한 면세	76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76
2. 면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83
3.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 필요성	87
4.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 개정안	88
5. 세제지원 효과분석	89
제3절 기타 세제 개선 방안	106
1.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	106
2. 디지털 전환 관련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 면세	107
3.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범위에서 제외	109
4.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송신기 구입시 관세면제 등	112
5.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15
제4장 세제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118
1. 조사방법 및 내용	118
2. 조사 결과	118
제5장 세수감소효과에 대한 재정책확보방안	124
제1절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축소	124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124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책적 효과	127
제2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재검토	128
1. 현행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규정	128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공제현황	1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0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	132
제3절 방송통신분야의 세제지원의 제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제안	133
1.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 방송을 위한 송신기 구입시 관세 면제	133
2. KBS, 공공채널, 방송통신발전 기금 관련 출연 및 기부금 지출시 특례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133
3.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134
4. 방송통신콘텐츠 육성을 위한 이자·배당 비과세	134
5. 지방세특례제한법 방송사업자 지방세감면	134
6.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등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134
참 고 문 헌	136

표 목 차

<표 2-1> 방송산업의 분류	10
<표 2-2> 방송·통신산업 부문의 조세지원현황	11
<표 2-3> 삼성전자와 애플 실적비교	41
<표 2-4> 삼성전자 2011년 1분기 손익계산서(2011.1.1~2011.3.31)	42
<표 3-1> 연도별 소득공제율 요약	46
<표 3-2>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47
<표 3-3>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48
<표 3-4> 통신비 세부항목	50
<표 3-5> 교육비 세부항목	51
<표 3-6> 보건의료비 세부항목	52
<표 3-7>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53
<표 3-8> 항목별 가계소비지출비중	54
<표 3-9>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지출액	54
<표 3-10> 세율인하를 반영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74
<표 3-11> 방송통신비 특별공제 금액 추정	75
<표 3-12> 통신비 특별공제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 추계	76
<표 3-13> 2011년 우리나라 가구수	88
<표 3-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88
<표 3-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89
<표 3-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90
<표 3-1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수신료 수익 증감	90
<표 3-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수신료수익(매출)	95
<표 3-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요경비(매입)	95

<표 3-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공제 비율	96
<표 3-21>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5년말)	96
<표 3-22>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7년말)	97
<표 3-23>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9년말)	98
<표 3-24> PP 사업자별 수신료 수입 연도별 추이	100
<표 3-25> 2010년 사업년도 종합유선방송 손익현황	101
<표 3-26> 면세 실시 후 법인세 증가	101
<표 3-27> 방송광고 매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102
<표 3-28> SO 및 위성의 송출수수료 연도별 추이	103
<표 3-29>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104
<표 3-30> 면세 세제지원의 종합적인 효과(아날로그방송은 2017년 과세부활)	104
<표 4-1> 방송통신료에 대한 부담정도	118
<표 4-2> 월 평균 방송통신비 부담액	119
<표 4-3> 방송통신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119
<표 4-4>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	120
<표 4-5>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120
<표 4-6> 방송통신요금의 면세적용 필요성에 대한 타 면세항목과의 우선순위	121
<표 4-7> 방송통신서비스의 소득공제 적용의 우선순위	122
<표 4-8>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항목추가에 대한 동의여부(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축소)	123
<표 4-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현황(2006~2009)	127
<표 4-10>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신고현황	128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4
[그림 3-1] 원격대학 학생 수 추이(전문대학 및 대학 과정)	69
[그림 3-2] 전자민원(G4C) 서비스 이용 추이	70
[그림 3-3] 전자납부 서비스이용 추이	71
[그림 3-4]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81
[그림 3-5] 면세실시에 따른 균형가격 및 균형공급량	8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 분야는 IT산업분야와 접목되어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우리생활의 일부분에서만 사용되던 방송통신서비스가 스마트폰, 방송통신의 융합서비스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행태에도 변화가 일어날 만큼 우리 생활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산업전반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근 방송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던 과거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던 때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지 방송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기기가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서비스는 기존의 식료품, 주거, 금융수수료 등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서비스는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간접자본의 기능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간 애플이 불과 3여년의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매출을 앞질러 세계 시가 총액 2위의 기업이 된 것을 통하여 방송통신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분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법에 방송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송법에 방송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세 지원의 주요 틀은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충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지원의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면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국

가발전전략 상 우선순위를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주로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법에 방송통신산업분야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세제지원현황과 약 및 세제지원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왜 필요한지, 시대적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분석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분야의 세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한 세제개선 안에 따른 산업의 경제효과 및 국가의 세원증감의 예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분석하여 향후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방송통신분야의 현행 과세 및 세제지원현황을 먼저 분석 하고 방송통신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세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각 조세지원 정책에 따른 국가재정측면과 방송법에 방송통신산업 부문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현행 방송법에 방송통신산업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의 문헌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지원이 없거나 미약한 분야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운 지원방법의 방향 및 방법을 정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세제지원 관련 문헌연구에서는 조세관련 이론 검토와 조세의 종류와 세목별 주요 특성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분야 세제지원에 대한 국외 지원 사례를 우선 찾아보고, 타 산업분야에 대한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원현황도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관련 소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방송통신분야의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3.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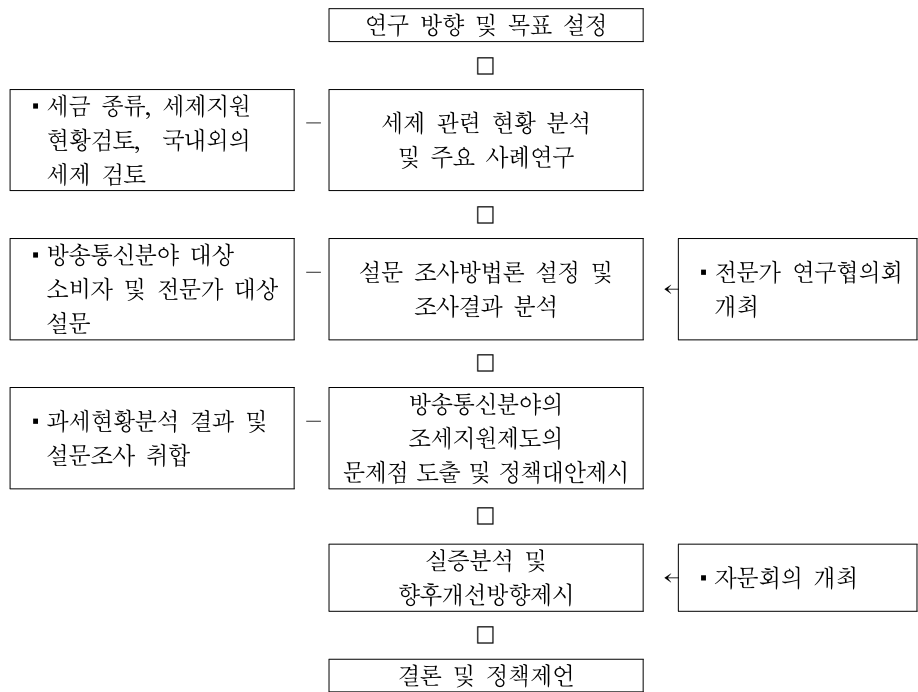
본 연구의 한계로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방송통신분야에 관련되는 세금 중 국민경제에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간주되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항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방송통신분야의 국내외 관련 자료를 구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선행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연구의 기준이 될 만한 비교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세제 도입의 결과분석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조건을 걸고 정해진 가정 하에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에서 먼저 연구 목적 및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세제 관련 문헌 및 이론 검토와 방송통신분야의 세제지원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현황 분석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분야의 세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세제개선 안에 따른 산업의 경제효과 및 국가의 세원증감의 예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분석하고 향후 세제개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

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제2장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및 필요성

세제지원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통신업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업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세제지원현황을 방송·통신산업에서 공급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현황과 소비자인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절 방송통신업의 범위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사업의 범위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

(1) 방송사업(방송법 제2조)

방송사업은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

지상파방송사업이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이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위성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이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분류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콘텐츠를 공급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세법상 방송·통신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통신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방송업과 통신업으로 분류된다.

1) 방송업

- 방송업 : 라디오방송업과 텔레비전방송업으로 분류
- 텔레비전방송업 : 지상파방송업과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방송업으로 분류

① 라디오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예를들면 교통방송(라디오), 불교라디오방송, 천주교라디오방송, AM라디오방송, FM라디오방송, 기독교라디오방송 등이 있다.

② 지상파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은 제외한다.

③ 프로그램공급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선 및 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출된다.

④ 유선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등이 있다.

⑤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를들면 위성방송 등이 있다.

2) 통신업

통신업은 우편업과 전기통신업으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업은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으로 분류한다.

① 우편업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우편

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의 금융 활동은 제외한다.

② 유선통신업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다만, 임차한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은 제외한다.

③ 무선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선전화 서비스업, 무선폭출 서비스업, 무선인터넷 서비스업, TRS 사업 등이 있다.

④ 위성통신업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은 제외한다. 위성통신업의 예를 들면 위성전화 서비스, 위성인터넷 서비스 등이 있다.

⑤ 통신재판매업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 서비스, 유선인터넷 재판매 등이 있다.

⑥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앞에서 열거된 것 이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레이더 서비스, 방송전송 서비스, 미사일유도 서비스,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등이 있다.

<표 2-1> 방송산업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방송 산업	지상파방송업			6021(지상파방송업)
	라디오방송	(공영, 민영, 특수)		601(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	(공영, 민영)		602(텔레비전방송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신설
	유선방송업	(MSO, 독립SO)		60222(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			60222분리
	중계유선방송			60222분리
	음악유선방송			60222분리
	위성방송업			60229(위성, 기타방송업)
	일반위성방송			60229분리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신설
	프로그램제작·공급업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홈쇼핑, 데이터)		60221(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제작업			59114(방송프로그램제작업)
	IPTV			60229분리
	기타방송업			60229
	전광판방송업			60229분리
	인터넷방송업			60229분리
	기타방송업			60229분리

제2절 방송·통신산업의 세제 지원 현황

1. 소비자(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현황

소비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장애인용 보장구, 농·축·임업용 기자재 등 처럼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규정을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지출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비를 지출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지원규정은 공중전화요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공급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현황

주로 세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중심으로 현재 방송통신산업 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방송통신산업 부문의 조세지원현황

내용	대상업종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 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역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함), 공영사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방송사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뉴스제공업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사업, 공연산업	고용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리스를 제외)를 한 금액의 100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및 재산세 감면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함)	있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의 재산세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개별소비세 감면	방송·신문용 고급사진기	조건부로 특소세를 면세

(1) 중소기업의 범위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

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지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규모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 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3) 유예기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

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적용규정

-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방송·통신업에 대한 적용

방송·통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해당업종에 방송업과 전기통신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업종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우편업을 제외한 통신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업, 전기통신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방송업과 전기통신업의 경우 지식기반사업에 해당되어 수도권내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감면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이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 감면비율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감면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중기업이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소기업

가.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10%

나. 수도권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20%

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30%

② 중기업

가.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5%

나.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10%

다.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산출세액의 15%

위에서 말하는 지식기반사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엔지니어링사업
 - ㉡ 전기통신업
 - ㉢ 연구개발업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전문디자인업
-

-
- ㉔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㉕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㉖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㉗ **방송업**
 - ㉘ 정보서비스업
-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방송업과 전기통신업을 포함(동조 제3항)시킴으로써 일정 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한다.

1) 감면대상기업

① 창업중소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말한다.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2)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위의 감면대상업종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그리고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3) 감면혜택

① 법인세감면

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세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등록면허세 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다.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기타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1)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가. 기계장치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적용한다.

2)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외한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리스를 제외)를 한 금액의 100분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이 정하는 투자에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운영업, 방송업, 공연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23조). 다만, 고용창출을 위한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1) 감면대상

① 감면대상투자

감면대상투자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를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마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나.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라.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마.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② 투자개시시기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하여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가.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다.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라.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세액공제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 \text{청년근로자수} \times 1\text{천}500\text{만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frac{[\text{공제받은 과세연도}(2\text{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나.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frac{[\text{공제받은 과세연도}(2\text{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②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frac{[\text{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 \text{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times 1\text{천}500\text{만원}}{}$$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해당 기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frac{[\text{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text{천만원} + \text{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times 1\text{천}500\text{만원}}{}$$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

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추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7)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2목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로 2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8조 제1항 17목에서는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보육시설용”의 것에 대하여 조건부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다.

□관련법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별갑), 산호, 호박(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용단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전기냉방기
- 나. 전기냉장고
- 다. 전기세탁기
- 라. 텔레비전수상기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별	연간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0분의 2
3	1천억원 초과	10억원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미조립) 상태로 반출(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이화학)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축음기) 침(침)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
-

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어린이집 보육용인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3절 다른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방송·통신산업과 비교하여 유사 산업 분야인 연구 및 개발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세제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중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 외의 내국인의 경우,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탁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을 공제한다.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제10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 계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조의 2)

조특법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 기업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 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위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대상

- 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효과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1) 대상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2) 효과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1) 대상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2) 효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취득세 면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대상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2) 효과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 감면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창투사는 ①창업자 ②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결과 업무집행 ④해외투자 등에 50%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280조

1) 대상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2) 효과

과밀억제권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제4절 방송·통신산업의 세제 지원의 문제점 및 필요성

1. 방송산업 세제 지원의 문제점

(1) 현행 세법에서는 방송·통신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업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방송통신 공급자측면에서의 세제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세제지원에 포함되어서라도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방송통신 소비자의 측면에서의 세제지원규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방송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TV 등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적어도 다른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방송·통신산업의 세제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산업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창의성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획·개발의 중요도가 크고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로 영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초생활품이다

방송통신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고 영향력이 지대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의 하루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1시간 51분(2009년 통계청자료)임을 감안하면 방송은 이미 생활의 필수품 화 된 상태이다. 생활품으로 지정된 스낵과자, 인스턴트커피 및 참치캔 등에 비하여 방송이 생활품으로서 자격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삶에 기여정도가 약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제지원대상인 생활품에는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방식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어 방송통신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유선 전화는 1,891만대, 이동전화는 5,151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통신장비가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3만 1,500원에서 2010년 13만 8,6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5.7%에서 2010년 6.1%로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함께 이동통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주원인으로 보이며 통신비 지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제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방송·통신비지출은 면세대상인 식료품, 주거에 대한 지출 등 기초생활필수품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면세대상인 필수재 성격이 강한 식료품, 주거 및 금융수수료와 같은 지출비중은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총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95년 2.1%에서 08년 5.7%로 3.6%증가하였으며, 지출항목들 중에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대상인 필수재 성격이 강한 식료품, 주거 및 금융수수료와 같은 지출비중은 감소하였다. 아래 표에서 금융수수료 등은 기타소비로 분류되었다.

구 분	지출비 중 감소항목					
	식료품	주거	가구집기	의류및신발	교양오락	기타소비
1995	29.0	3.8	4.7	7.7	5.3	19.4
2000	27.4	3.5	3.6	5.6	5.2	17.8
2005	26.4	3.4	4.1	5.3	4.9	16.9
2008	25.6	3.4	4.3	5.1	4.7	17.3
격차 (95년 대비)	-3.4	-0.4	-0.4	-2.6	-0.6	-2.1

(주) 1.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명목기준)

2. 신분류에서는 2003년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1963년 이후의 자료를 포함하는 구분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통신비는 상당부분 면세대상인 가계지출항목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용에 대해서도 필수재로 보아 면세적용을 검토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여진다.)

(3) 국가 선도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선도 기업하면 삼성전자이나 애플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삼성전자와 애플 실적비교

- 기간 : 2011.01.01~2011.03.31
- 환율 : 2011.03.31. 기준환율(1,107.2원)
- 기타 : 삼성그룹 전체가 아닌 삼성전자만 대상으로 함

(단위 : 백만원)

구분	삼성전자(A)	애플(B)	비교(=B-A)
매출	26,989,962	27,311,302	321,340
영업이익	2,449,467	8,718,092	6,268,625
영업이익률	9.26%	31.92%	22.66%
순이익	2,197,639	6,628,806	4,431,167

애플의 올 1~3월 실적은 매출 246억6700만달러, 영업이익 78억7400만달러, 순이익 59억87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73%, 97.89%, 94.76%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을 3월 말 기준환율로 환산하면 8조718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2조4494억원)보다 3배 이상 많고, IT 하드웨어 최대기업인 인텔(원화환산 4조6037억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1.92%로 삼성전자의 9.26%보다 3.4배나 높다. 시가총액을 따지면 세계 시총 2위는 애플이고 31위가 삼성전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인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간 애플이 불과 3여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을 앞지르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분야에 대한 선점 효과인 셈이다. 급변하는 미래에 유망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국가 성장은 있을 수 없다.

1) 김민철외,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일 뿐 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야 지원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산업을 국가 선도 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 삼성전자 2011년 1분기 손익계산서(2011.1.1~2011.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3 기 1분기
	3개월
매출액	26,989,962
매출원가	20,259,328
매출총이익	6,730,634
연구개발비	2,208,265
판매비와관리비	2,552,822
기타영업수익	573,833
기타영업비용	93,913
영업이익(손실)	2,449,467
금융수익	761,133
이자수익	95,033
외환차익	210,560
외화환산이익	439,046
기타금융수익	16,494
금융비용	684,578
이자비용	66,369
외환차손	293,503
외화환산손실	317,513
기타금융비용	7,1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26,022
법인세비용	328,383
계속영업이익(손실)	2,197,639
당기순이익(손실)	2,197,63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4,381
희석주당이익(손실)	14,350

(4) 사회간접자본이다

1) 정의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재화의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 원료를 의미한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한다. 둘째,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공급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든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2) 우리나라 상황—왜 사회간접자본인가?

한국공영방송사에 지원책은 재정지원과 수신료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통신분야는 통신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부재 및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책 부족이 통신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가 선도 산업으로 성장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3) 타 사회간접자본 지원책과 비교

—민자 도로 지원책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신설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9개 노선이 있다. 이들 도로는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를 추정하여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에 미달할 시 추정통행료의 일정비율까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는데 그 중 미시령터널을 포함한 동서관통도로 개통에 따른 (주)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야 할 통행료는 2036년까지 30년간으로 현재 통행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전 금액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 방송통신산업 분야 세제 개선 방안

제1절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1. 종합소득 과세 체계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필요경비차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1인당 합산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타의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된다.

상기의 경우 중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차감하고, 비용공제적 성격의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세율 등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다.²⁾

2. 소득세 공제체계

(1) 종류

종합소득세의 소득구성 항목 중 소득(또는 소득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소득공제 체계도 이들 두 가지 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중

2) 성명재, 권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9.

심으로 설명한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큰 틀로 정의된다.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세분된다. 공제대상의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면, 인적공제와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소득자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특성(연령, 수, 특정 조건의 충족여부)을 기준으로 공제수준이 결정되는 인적공제항목이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특별항목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항목이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성실사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별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으며, 대신 60만원 정액의 표준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그 밖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³⁾

(2) 주요 소득공제의 내용

근로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또는 근로·사업소득세)의 공제항목에서 세수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이다. 2011년 현재 근로소득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5~80%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무제한이다. 2008년까지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 이르렀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율의 인하와 기본공제의 인상이 정확히 일치하여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이보다 많은 가구, 즉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득공제가 이전

3) 성명재, 권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9.

보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연도별 소득공제율 요약

(단위 : 만원)

구분	구간별 공제율	공제한도(상한)
1982년	88 이하 : 전액	170
	88 ~ 300 : 20%	
	300 ~ : 10%	
1983 ~ 1988	94 이하 : 전액	170
	94~300 : 20%	
	300 ~ : 10%	
1989 ~ 1990	140 이하 : 전액	230
	140~400 : 25%	
	3400 ~ : 15%	
1991 ~ 1992	230 이하 : 전액	490
	230~ : 30%	
1993	250이하 : 전액	600
	250~ : 30%	
1994	270 이하 : 전액	620
	270~ : 30%	
1995	310 이하 : 전액	690
	310~ : 30%	
1996	400이하 : 전액	800
	400~ : 30%	
1997 ~ 1998	500이하 : 전액	900
	500~ : 30%	
1999 ~ 2000	500이하 : 전액	1,200
	500~1,500 : 40%	
	1,500~ : 10%	
2001	500 이하 : 전액	없음
	500~1,500 : 40%	
	1,500~4,500 : 10%	
	4,500~ : 5%	
2002 ~ 2003.6	500이하 : 전액	없음
	500~1,500 : 45%	
	1,500~3,000 : 15%	
	3,000~4,500 : 10%	
2003.7 ~ 2008	4,500~ : 5%	없음
	500이하 : 전액	
	500~1,500 : 50%	
	1,500~3,000 : 15%	

	3,000~4,500 : 10%	
	4,500~ : 5%	
2009 ~ 현재	500이하 : 80%	없음
	500~1,500 : 50%	
	1,500~3,000 : 15%	
	3,000~4,500 : 10%	
	4,500~ : 5%	

주 : 2003년 7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500만원~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45/100에서 50/10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은 공제율을 475/1000로 함.

<표 3-2>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공제항목		공제한도
근로소득 공제	• 500 만원 이하	80%
	• 500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초과분의 50%
	• 1,500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3,000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
	•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연간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자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만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다자녀공제	부녀자공제 : 50만원 자녀 2인 50만원 + 2인초과 1인당 100만원
특별공제 등	출산·입양공제	출생·입양공제 : 200만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부담금전액
	보험료	의료, 고용보험료 : 전액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한도
		총급여 3%초과분 : 500만원한도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	본인 : 전액공제
		대학생(사이버대학 포함) : 90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300만원한도
	주택자금 (3개, 1천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40% 300만원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상동
		주택월세소득공제 : 상동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 전액 1천만원 한도	법정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한도
		정치자금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 한도
		특례기부금 : 30%, 50% 한도
		지정기부금 : 10%, 20% 한도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등 공제율 : 20%
	투자조합출자	직불카드등 공제율 : 25%
	연금저축, 퇴직연금	투자금액의 10%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 3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출연금 전액(한도 4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한도 300만원)
		납입액의 5%, 10%, 20% (한도 1,200만원)
		임금삭감액의 50% (한도 1,0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
	정치자금기부금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 (한도 50만원)
	기타	기부금의 10/11 상당액 (한도 10만원)
		을근납세공제조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표 3-3>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단위 : 만원)

구분	구간별공제율	공제한도
1982년	월급여 30 ~ 40 : 10%	—
1983 ~ 1988	월급여 30 ~ 40 : 20%	—
	월급여 40 ~ 50 : 10%	
1989	폐지	—
1990 상반기	산출세액의 20%	30
1990. 7	월급여 100이하 : 40%	80
	월급여 100 ~ : 30%	
1991 ~ 1992	연금여액 3,600만원이하	50
	: 산출세액의 20%	
1993 ~ 1996	(전근로자)	50
	산출세액의 20%	
1997 ~ 2001	산출세액 50이하 : 45%	60
	산출세액 50~ : 30%	
2002 ~ 2003. 6	산출세액 50이하 : 45%	40
	산출세액 50 ~ : 30%	
2003. 7 ~ 현재	산출세액 50이하 : 55%	50
	산출세액 50 ~ : 30%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55% 또는 30%의 세율로 세액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다. 세액공제의 상한을 50만원으로 한정하여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추가적으로 많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으로부터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공제해준다.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공제해준다.⁴⁾

3. 소득공제의 필요성

(1) 방송·통신비의 가계부담증가

최근 가계통신비의 금액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주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통신사는 IPTV,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을 통합한 결합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방송요금과 통신요금의 구분이 없어지고 점점 방송·통신비가 하나의 지출항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에 의하면 방송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이 24,333원으로 통신비지출액인 138,646원의 17.5%정도 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비에 대한 증감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신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황과 변화추이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계통신비

가계통신비는 가구원의 개별 통신서비스 가입유무 및 가입자 수, 통화량, 통신서비스의 요금수준 및 요금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변수들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는 가족할인 요금제, 결합서비스 등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비지출의 구조와 범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가하는 크기 등을 살펴보면 통신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4) 성명재, 권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9.

발표하는 통신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연금, 사회보장보험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후에 통신비의 변화추이와 소득공제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연금, 사회보장보험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가계통신비는 가계의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지출, 가구구성원들의 이동전화관련 지출의 합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각국별로 또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별로 다소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유 무선전화이용료와 기기구입비는 통신비에 포함된다. 통신비 범위가 발표하는 기관별로 상이하기에, 통신비 지출 수준의 자료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은 소비지출 항목을 모두 10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통신비 지출이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된다. 통계청은 소비지출의 항목 중 하나로 통신비를 “물건의 운송, 정보이용과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신비 세부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통계청의 통신비 범위에는 일반전화요금과 이동전화요금,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우편요금, 인터넷이용료 및 기타통신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시의 보증금은 ‘빌려준 돈’으로 분류되어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동전화기기로 사용한 인터넷이용료는 ‘인터넷이용료’로 분류된다. 여기서 인터넷이용료는 인터넷사용료,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기기로 사용한 인터넷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유료콘텐츠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전화기기로 사용한 유료콘텐츠이용료 등은 ‘교양오락비’로 분류되어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택배는 ‘교통’으로 분류되어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4> 통신비 세부항목

항목명	정의	내역
일반 전화요금	일반전화기기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 일반전화요금 • 공중전화: 전화요금, 공중전화카드 • 전화설치서비스: 전화설치비, 이전비, 전화기기임차료 등 • 전화유료서비스: 1588, ARS, 수신자부담, 전화응답, 발신자표시, 로밍서비스, 전화개쇄 등 • 기타일반전화요금: 팩시밀리, 키폰, 전보요금(전화요금)

		에 청구된 것) 등
이동 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 이동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카폰요금, 무선호출기요금, 이동전화기기 부가서비스 등 • 이동전화서비스: 부가서비스, 가입비, 이동전화임차료 등
일반 전화기기	일반전화기기의 구입비용	• 일반전화기기: 유선전화기, 가정용무선전화기, 자동응 답기 등 • 기타일반전화기기: 팩시밀리, 키폰 등 • 일반전화기기부품: 안테나, 팩시밀리링크, 자동응답기 테이프 등
이동 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등의 구입비용	• 이동전화기기(휴대폰) • 기타이동전화기기: 카폰, 무선호출기 등 • 이동전화기기부품: 핸드프리,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 기 등
우편요금	관계엽서, 우표, 소포우편요금, 항공우편요금 등	• 우편요금: 소포우편요금, 항공메일, 관계엽서, 우표 등 • 우편서비스요금: 소포포장비 등
인터넷	인터넷(ADSL, 케이블, 전용선 등)서비스에 청구된 사용료	• 인터넷사용료: 인터넷기본요금, 인터넷데이터전송료 등 • 인터넷서비스: 인터넷가입비, 인터넷설치비, 모뎀임대료 등 • 이동전화기기로 사용한 인터넷이용료
기타통신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통신비	• 일반전화기수리비, 이동전화기수리비, 이동전화기 충전 비 등

주: 1. 나중에 환불받는 일반전화보증금 및 이동전화보증금은 ‘빌려준 돈’으로 분류

2. 이동전화의 무선데이터이용료는 “인터넷이용료”항목으로 분류되며, 콘텐츠이용료는
“교양오락>교양오락용품기구>기타교양오락용품”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2005), p.296.

교육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5> 교육비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초등교육	• 유치원 • 초등학교
중등교육	•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교육	• 전문대학 •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대학원
학원 및 보습교육	• 입시 및 보습

	• 음악학원 • 미술학원 • 운동학원 • 직업준비학원 • 방문학습지 • 체험교육 • 기타학원교육비
성인학원교육	• 개인과외비 • 성인직업학원 • 외국어학원
기타교육	• 운동 및 교양교육 • 학교보충교육비 • 평생교육원 • 국내교육연수 • 국외연수비

자료 : 통계청 2009항목분류표

<표 3-6> 보건의료비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의약품	• 조제양약 • 판매양약 • 한약 및 한약재 • 인삼 • 영양보조제
의료용 소모품	• 보건의료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 안경 및 콘택트 • 기타보건의료기구
외래의료서비스	• 일반병의원외래비 • 한방병원외래비
치과서비스	• 치과외래비
기타의료서비스	•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 병원입원치료비

자료 : 통계청 2009항목분류표

통계청 2009년 항목분류표에 의하면 연금의 세부항목으로는 국민연금기여금과 기타연금 기여금이 있고 사회보장의 세부항목에는 건강보험료와 기타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⁵⁾

2) 통신비 변화 추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통신비는 1995년 가구당 평균지출액이 26,727원이었던 것이 2010년 기준으로 138,146원으로 무려 111,419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통신비지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통신비지출액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5년 보건의료비의 절반도 안되었던 통신비가 2010년에는 보건의료비대비 9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1995대비 가계소비지출증가율을 보면 교육비는 133.65%, 보건의료비는 156.26%로 크게 증가했지만 통신비는 이를 훨씬 웃도는 416.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신비는 증가한 절대금액으로 보나 그 증가율로 보나 공제대상인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액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비금액의 크기에 있어서도 공제대상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지출액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단위 : 원)

구분	통신	교육	보건의료	연금	사회보장보험
1995	26,727	127,027	59,373	16,210	16,461
2000	77,046	182,370	70,606	41,850	33,146
2005	133,886	245,901	102,970	64,716	51,916
2008	134,405	300,106	120,940	84,725	79,627
2010	138,146	296,801	152,150	94,760	90,668
1995년 대비 증가율	416.88%	133.65%	156.26%	484.58%	450.80%

1.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명목기준)

2. 1995년, 2000년, 2008년은 구분류를 기준으로하고 2010년은 신분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아래 표는 가계소비지출에서 각 항목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1995년 대비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

- 5) 김민철외,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가폭이 교육비는 2.94%, 의료보건비는 1.96%에 그친 반면 통신비의 경우는 3.93%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신비의 증가폭과 의료보건비의 증가폭의 차이는 1.97%, 교육비의 증가폭과의 차이는 0.99%나 된다.

통신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에서 보면 가계소비지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금, 사회보장보험보다 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의료보건지출액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항목별 가계소비지출비중

구분	통신	교육	의료보건	연금	사회보장보험
1995	2.06%	9.78%	4.57%	1.25%	1.27%
2000	4.51%	10.68%	4.14%	2.45%	1.94%
2005	6.06%	11.13%	4.66%	2.93%	2.35%
2008	5.30%	11.83%	4.77%	3.34%	3.14%
2010	5.59%	12.01%	6.15%	3.83%	3.67%
1995년 대비 증가폭	3.53%	2.22%	1.58%	2.58%	2.4%

1.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명목기준)
 2. 1995년, 2000년, 2008년은 구분류를 기준으로하고 2010년은 신분류를 기준으로 함
 3. 연금과 사회보장보험은 비소비지출항목이지만 비교를 위하여 소비지출항목으로 가정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다음 표는 월평균 가계통신비지출액을 근로자와 근로자 외의 자 그리고 전체로 산정한 결과이다. 이표를 보면 근로자의 월평균 가계통신비지출액증가율이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지출액

(단위 : 원)

구분	전체	근로자	근로자외
1995	26,727	24,529	30,422
2000	77,046	74,785	79,940
2005	133,886	133,101	134,999
2008	134,405	136,706	131,146
2010	138,146	142,777	132,336
1995년대비 증가율	416.88%	482.07%	435%

주1.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명목기준)

2. 1995년, 2000년, 2008년은 구분류를 기준으로하고 2010년은 신분류를 기준으로 함.

(2) 소득공제항목의 지출성격⁶⁾

종합소득세의 소득구성 항목 중 소득(또는 소득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소득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소득공제 체계도 이들 두 가지 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큰 틀로 정의된다.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세분된다. 공제대상의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면, 인적공제와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소득자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특성(연령, 수, 특정 조건의 충족여부)을 기준으로 공제수준이 결정되는 인적공제항목이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항목이다. 이 중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성실사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별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으며, 대신 60만원 정액의 표준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종합소득공제중 인적공제이외의 항목에 대한 공제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보아 방송·통신비에 대한 공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는 특정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을 경감하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경제활동을 위해 P 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이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할 경우 한계세율이 t 인 사람은 기회비용이 $P(1-t)$ 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공제는 공제와 관련된 활동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누진소득세제하에서는 기회비용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6) 성명재, 권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9.

더 커진다.

특별공제의 또 다른 의미는 특정 소비 또는 투자활동의 경우 모든 가구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가구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큰 소비 또는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적공제의 필요성을 자녀양육비라는 비재량적 지출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과 같은 비재량적 지출 성격의 지출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특별공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특별공제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을 들 수 있다.

2) 보험료공제

보험료 공제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강제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지출은 일종의 비재량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의 유인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책임보험 이상의 보장성을 요구하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입의 기회비용을 경감하는 이 공제항목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역금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나 사망 또는 사고 등의 위험 발생이 유발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정부가 사람들로 하역금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직면하게 될지 모른 위험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거나 또한 위험 공유에 대한 선호가 약할 때 정부가 나서서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보가 완전하여 보험에 충분한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시장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람들이 위험의 공유에 대한 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람들로 하역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람들의 선호는 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므로, 만일 이에 왜곡요인, 예를 들어 위험발생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행위가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위험발생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외부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3)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는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지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질병발생시 대규모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진료비의 경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비 지출은 많은 경우 비재량적 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의 필요성은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영국과 같이 국가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의 필요성이 작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증질환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은 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제3자 지불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비급여 대상 진료료가 많다. 또한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비 공제가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비용 경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진료비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위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진료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육비공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항목의 경제적 필요성은 교육

비가 비재량적 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비라면 이 항목에 대한 공제의 필요성을 찾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해 재량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비 공제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비는 흔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된다. 교육비 공제는 물적 투자에 대해 허용되는 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의미의 조세지원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을 교육비에 대해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시장에서의 시장의 실패가 전체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투자에서와 같이 교육비 지출 총액을 감가상각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투자의 외부성과 관련하여서는 거시경제학 분야 특히 경제성장론에서 심도 있게 연구된 바 있다.

5)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임차차입금원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지급에 대한 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택 마련이라는 것은 여타 자산취득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택 거래가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택구입이 단순히 자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라면 이 공제항목의 존재 의의가 없다. 주택자금 공제의 존재 의의는 주택구입의 외부성의 존재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구입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안정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주택저당채권 이자지불액에 대한 공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이 공제의 존재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지원규모에 비하여 그 외부성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6) 기부금공제

기부금 공제는 종교, 사회봉사, 교육, 연구, 문예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서 공제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의 타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사적단체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기부금 공제가 실제로 기부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므로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기부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외부경제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선기부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기부자의 한계세율이 1이라면 기부금 공제는 기부의 기회비용을 1에서 1- α 로 낮춘다. 만일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기부금 공제로 인한 국세청의 조세수입 감소액보다도 기부금 증가효과가 더 크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0.5정도로 1보다 작다. 만일 이 실증연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기부금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기부금 공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해당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신용카드공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들 제도의 특징은 주로 사업자들에게 대한 인센티브제공이라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상향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금전적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비자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과표양성화의 압력을 가하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액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8)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는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민간연금으로서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연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인이 노후소비를 위한 대비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근시안적인 태도, 정보의 부족, 유동성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인은 시계가 워낙 짧아서 먼 훗날의 소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노후소비수단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후소비수단을 자발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이런 경우 정부가 공적연금이라는 강제저축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노후대비 저축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노후소비수단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연금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정부재정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민간연금시장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간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민간연금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기업연금(개인연금)제도의 발전이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연금저축액 또는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저축을 위한 기회비용이 낮아져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증가할 유인이 발생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문제이다. 조세지원으로 인해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체 저축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저축액이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의한 여타저축 구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iamond and Hausnam(1984), Hubbard(1986) 등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따른 비연금자산의 구축효과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구축효과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연구로 전영준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연금자산이 연금자

산 증가분의 20%정도를 구축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경향은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여타저축을 일부 구축하지만 100% 구축하지 않아 전체 저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비수단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소비수단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수준은 노후소비를 위해 필요한 저축액, 공적연금과 민간연금간의 역할 분담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9) 방송·통신요금의 비재량성

소득공제항목 중 특별공제대상들은 앞에서 살펴본 결과 비재량적인 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과표양성화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럼, 방송·통신서비스는 비재량적인 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는 개인이 각자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통신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못하거나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방송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 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방송·통신서비스는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인 지출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통신비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실질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비재량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아이폰의 폭발적인 인기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의 비약적인 증가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 등과 맞물려 세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은 인터넷의 확산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2010년에 6백만 명을 돌파하고, 2011년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신기기의 하나인 스마트폰이 이렇듯 보급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방송·통

신서비스가 우리의 생활의 형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모든 산업분야는 방송·통신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변모되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각 개인들의 방송·통신서비스의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이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또한 기존의 산업분야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므로 정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차세대 통신망 서비스

방송·통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TV와 IPTV의 발전, 콘텐츠 부문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확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차세대 통신망 구축이 선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통신망 구축에 대한 비용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방송·통신비의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고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확산 전략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대한 비용 역시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신망구축으로 인하여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통신망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스마트 그리드는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구현된 차세대 전력시스템 및 관리체제로서 현재 수직적·중앙 집중적 전력 네트워크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적·협력적·분산적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고동수, 2009).

이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단지 전력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7) 홍성걸, 장덕희, “녹색성장 전략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아니라 통신·자동차·가전·건설·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녹색성장을 구축하는 국정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초고속 인터넷 망이 발달되어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단일 송배전 회사체제인 한국전력이 경쟁 체제를 수용하고, 스마트 그리드 체제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자 하면,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미국과 비교 하면, 미국은 전력망이 10개 지역 망으로 나뉘고, 3,300개 이상의 전력 회사가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Boulder시 에 구축된 시범 도시는 통신망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은 중전기 분야의 기술력이 유럽,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IT와 통신 분야 기술력은 가장 앞서 있다는 자신감이 결부되어 있다(키움증권,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은 국가차원에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며 동시에 기업차원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화, 개인 차원 에서는 저탄소 생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방송통신산업

그 동안 방송 통신 분야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전국 확충, 이동 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휴대 전화 서비스의 대중화,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과 이동 방송 서비스의 도입으로 한국을 정보 통신 서비스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주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방송 통신 분야 시장은 정점을 찍고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투자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달, 인터넷 서비스 기술의 대중화는 사물과 사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디지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만물이 지능 통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대는 사회생활 및 업무 시스템을 IT 기반으로 재구축함으로써 미래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특히 현대인의 삶을 주도하는 모바일 라이프 기술은 차세대 무선 통신 분야에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음성 및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2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접고 수십 Mbps까지의 초고속 휴대 인터넷,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넘어간 상태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인프라를 발판으로 100Mbps이상의 섬세한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추구하는 4세대 이동 통신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미디어 기기 보급 확대, 네트워크 및 IDC 구축 증가 등은 국민들의 방송통신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3) 버스운행정보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무선데이터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시내버스의 도착시간 안내, 버스 노선정보, 배차간격 및 돌발 상황 보고, 교통 관제서비스, 교통상황 모니터 정보를 운전자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전자신문, 2004. 11. 1). 2004년부터 휴대폰, PDA, 인터넷, ARS 등으로 버스운행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버스 위치가 실시간 공유되면 버스 회사에는 운영의 효율화와 승객의 시간절약,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정창덕, 2007).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업무통행의 경우 0.26조원의 편익이 증가하였으며 비업무통행은 0.14조 원의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 측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산출은 0.66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손정렬 외, 2009).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긍정적인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4)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비접촉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무선인식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상품, 동물, 사물 등에 태그를 부착해서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자국 전투기와 적의 전투기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RFID기술을 개발하였고 1980년 전후 태그의 소형화와 가격하락으로 가축관리, 철도차량

식별 등 특정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저가적, 고기능 태그가 개발되면서 의료, 유통, 교통, 건설,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었다.

RFID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가능케하는 필수 인프라이다. RFID는 가까운 미래, 모든 사물에 RFID칩이 내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사회 전체가 IT화되고, 자동화를 추진할수록 핵심기술로써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RFID기술은 모바일과 융합되어 휴대폰에 RFID리더기를 장착해 B2B영역뿐만 아니라 B2C 영역에서도 가입자가 휴대폰으로 RFID태그를 통해 제품의 진위 확인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RFID 리더가 장착된 이동통신용 단말기를 활용해 RFID 태그가 부착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안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모바일 RFID 서비스는 미국, 일본,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으로 RFID 산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5) 주민생활정보화(u-life)

주민생활정보화(u-life)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 휴대폰, PDA 및 디지털 가전 등 다양한 정보 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 및 경제 사회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u-government의 일환이다(하영수, 2008). 이와 같은 지역정보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민원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u-Korea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07~ 2011)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다(김진태, 2007).

6) u-City

u-City는 유비쿼터스 IT를 기반으로 물리적인 도시공간과 전자적 도시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되는 공간이다(정창덕, 2007). u-City는 시민 및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물 관리시스템, 스마트카드, RFID, IPv6, USN, BcN 등의 IT기술이 융합이 되어

구현된다. 서울시 상암동의 DMC(Digital Media City)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부산, 대전, 광주, 수원, 경북, 제주 등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u-City를 구현 중이다.

7) 원격근무

원격근무는 직장의 주 컴퓨터와 가정에 설치된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직장으로부터 출퇴근을 하지 않고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작업환경을 말한다. 이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자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회의나 서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출근하며, 영업직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직접 고객을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고 결과를 통신으로 전송하는 원격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격근무는 일반적인 업무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층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출퇴근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육체적 피로를 줄여주고, 개인의 생활 리듬과 취향에 알맞은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다양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정보인프라의 구축 여부이다.

완전한 의미의 원격근무가 가능 하려면 모든 업무처리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적용 중인 공공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있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하여 모든 업무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후 꾸준한 특허행정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3월에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실시간 통지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특허넷Ⅱ’를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허넷Ⅱ’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원격근무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격근무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격근무 심사관이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 이를 특허청 네트워크에 보내면 특허청은 이를 민원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고 민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원활한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지문인증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데 인식과정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시스템을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혹은 안구인식 등으로의 발전도 가능 하다.

또한 원격근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의 공정한 평가와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대면적 인사관행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허물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요구된다. 원격근무자들이 컴퓨터를 보며 혼자 업무를 함으로써 느끼는 의사소통의 부족이나 외로움, 유대감 부족 등의 정신적 문제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도모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각 원격 근무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시스템의 꾸준한 보완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8) u-헬스케어(u-Health Care)

u-헬스케어는 개인 사용자들이 병원 이외의 곳에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에 기반한 것으로 당뇨, 고혈압, 비만, 치매, 등 만성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u-헬스케어는 u-병원 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및 환자정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다룬다.

의사와 간호사는 종이 서류와 필름 대신, 디지털 진료차트를 이용하고, 환자는 개인스마트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내에서는 물론 진료시에도 무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예약, 접수, 수납까지 자동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다양한 병원들은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방송·통신서비스의 교육비등 증가억제효과⁸⁾

방송·통신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통신대학교이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하여 교육비가 절감된 대표

8) 김민철외,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역시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교육비 절감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비의 지출로 인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감소 됐다면 감소된 교육비공제액만큼 방송·통신서비스의 지출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총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95년 2.1%에서 08년 5.7%로 3.6%증가하였으며, 지출항목들 중에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지출은 여러 측면에서 여타 소비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5년에서 '08년 사이 교통비와 교육비 항목의 지출비중은 증가하였으나,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이 부분의 증가를 억제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구매나 전화구매, 온라인 예매 및 주문 등으로 교통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요금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교통비 증가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교육, 인터넷 지식획득을 통해 교육관련 지출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지출비 중 증가항목					지출 비중 감소항목					
	통신	교통	교육	보건 의료	광열 수도	식료 품	주 거	가구 집기	의류 및 신발	교양 오락	기타 소비
1995	2.1	9.2	10.0	4.7	4.1	29.0	3.8	4.7	7.7	5.3	19.4
2000	4.7	11.3	11.2	4.3	5.3	27.4	3.5	3.6	5.6	5.2	17.8
2005	6.4	10.9	11.8	4.9	4.9	26.4	3.4	4.1	5.3	4.9	16.9
2008 격차	5.7	11.3	12.6	5.1	4.9	25.6	3.4	4.3	5.1	4.7	17.3
(95년 대비)	3.6	2.1	2.6	0.4	0.7	-3.4	-0.4	-0.4	-2.6	-0.6	-2.1

주 : 1.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명목기준)

2. 신분류에서는 2003년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1963년 이후의 자료를 포함하는 구분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럼 구체적으로 방송·통신비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비와 교육비의 증가가 억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원격 교육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쇄교재, 방송교재, 오디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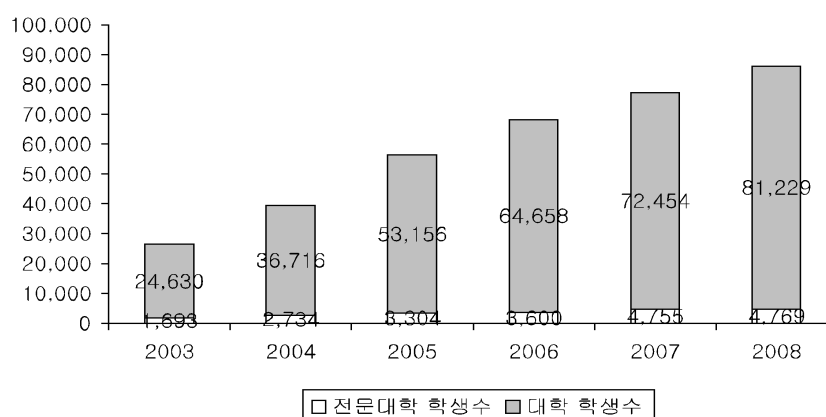
비디오교재,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 등을 매개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원격교육의 기술방식은 일정한 시간에 공중파를 이용하여 방송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해서 학습하는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등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수동적인 원격교육방식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초고속인터넷의 고속화 및 보편화를 통해 원격대학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말 기준 국내 원격대학에서 전문대학교수는 2개이며, 대학교는 15개이다. 원격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그림 3-2]와 같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국내 원격대학의 대학과정 학생 수는 약 8만 명, 전문대학과정의 학생 수는 약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격 교육은 학생들의 통학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가계지출 항목 중 교육비·교통비 부분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실제로 사이버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은 오프라인 대학 대비 2분의1~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1] 원격대학 학생 수 추이(전문대학 및 대학 과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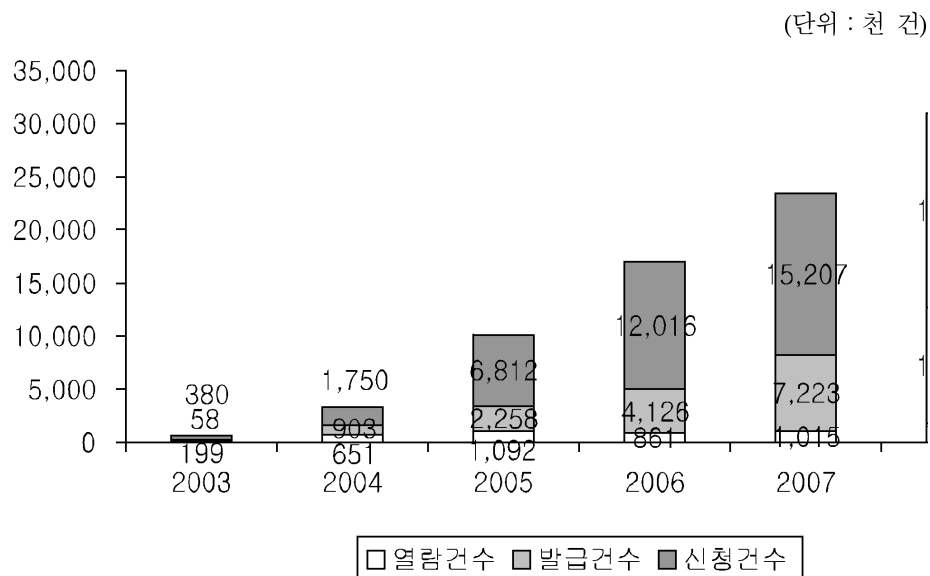
주: 원격대학 학생 수는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의 합으로 계산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 전자민원(G4C)

전자민원이란 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의미한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전자민원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총 1,487종, 열람 가능한 민원은 총 22종이며, 인터넷 발급 가능한 민원은 총 2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어디서나 민원’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총 11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가 개시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대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05년 7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 전자민원 신청건수는 1,825만건에 이른다.

[그림 3-2] 전자민원(G4C) 서비스 이용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전자민원G4C 시스템 www.egov.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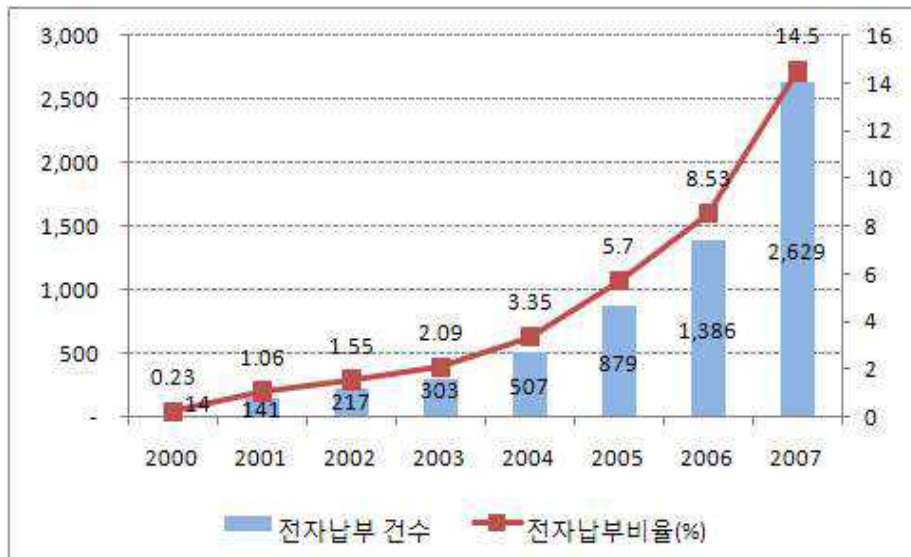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보안 기능 강화를 통해 전자민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교통비 및 민원 발급에 필요한 시간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 전자 납부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은행 ARS납부, 은행 TM납부, 홈택스 서비스 23) 납부, 카드인터넷(카드론)납부 실적의 합으로 계산된다.

[그림 3-3] 전자납부 서비스이용 추이

(단위 : 천 건, %)



자료 : 국세청

전자납부가 전체 납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0.23%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7년에는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의 인터넷뱅킹 및 은행 ARS, 은행 ATM의 사용증가에 기인한다. 전자납부 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홈택스 납부건수가 1,174천 건으로 전자납부의 44.7%를 차지하였으며, 은행

및 우체국 납부건수는 1,455천 건으로 전자납부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납부는 납세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과 교통비 및 탐색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소득공제 개정안

(1) 방송·통신비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방송·통신비의 범위

공제대상이 되는 방송·통신비는 지상파 방송서비스, 유선방송 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신재판매서비스, 유·무선통신 기기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2011.10.1)	개정안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생략)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현행(2011.10.1)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제110조의 2 (삭제) 제110조의 3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제110조의 2 (삭제)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제110조의 4 (방송·통신비 공제) 법 제52조 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비”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에 의해 허가·승인·등록 된 방송·통신 사업에 지출한 비용 말한다.

5. 세제지원 효과분석⁹⁾

방송·통신비의 소득공제항목 추가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세수 감소액 추계는 방송·통신비에서 방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최근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결합된 형태로 출시되어 그 구분이 중요성이 크지 않아 통신비에 대한 소득세수 감소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1) 분석의 전제

- 통계청 「가계동향」을 위해 조사된 표본이 통계학의 과학적 표본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어, 전체 가계의 통신비, 가구원수 등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 통계청 「가계동향」 표본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가계(기본공제 대상자인 가구원만 포함)의 22.37%가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김대은, “최종원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11.

- 통계청 「가계동향」표본을 분석한 결과, 통신비의 상승에 따라 전년도에는 공제한 도인 120만원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연도에 통신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는 전체 가계의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통신 이용자관점 정책평가 보고서의 방송통신비지출액대비 유료방송비지출액비율 11.86%를 가정하였다.
- 통신비의 상승에 따라 전체 가계의 1.54%에 해당하는 가계는 통신비가 연1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0만원의 소득공제 밖에 못 받는다.
- 2011~2015년 통신비의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11월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단, 2015년의 통신비의 상승률은 2011~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현황을 분석해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1.81명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정보원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75,000표본 가구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근로자 수는 1.20명으로 조사되었다.
- 통신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가구의 기본공제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평균 2.18명으로 추정되었다.
- 통계청 「가계동향」표본에 따르면 1가계의 가구원수는 2.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당 가계통신비의 75.30%만이 통신비 소득공제로 청구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소득세 세율인하를 반영한 NABO의 실효세율 추정치는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3-10> 세율인하를 반영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실효세율 추정치	10.02	10.02	10.02	10.02	10.02

-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특별공제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액을 추정하여 실효세율을 곱하여 추정할 것이다.

(2) 방송통신비 특별공제 금액 추계

2010년 기준으로 가계(기본공제 대상자인 가구원만 포함)의 22.37%가 연120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사용하고 있고, 통신비의 상승에 따라 매년 전체 가계의 1.54%가 120만원 초과 구간에 추가 편입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간별 특별공제금액을 추정하였다(120만원 이하 구간은 반대로 전체 가계의 1.54% 가구가 제외됨).

방송비지출액에 대한 특별공제금액은 120만원초과 공제금액의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120만원이하 공제금액에 대해서만 통신비특별공제금액의 11.86%를 추가 반영하였다.

과세대상자 수 8,539,216명과 120만원 이하 구간의 특별공제신청금액은 2010년 기준 53만원임을 이용하였다.

통신비 특별공제금액은 2011년 49,067억원에서 2015년 52,537억원으로 연평균 1.72%씩 증가하고, 5년간 특별공제금액은 254,12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통신비 특별공제액은 2011년~2015년의 통신비 특별공제액 연평균증가율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3-11> 방송통신비 특별공제 금액 추정

(단위 :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평균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3.2	2.9	3.0	3.0	3.0
120만원 초과 구간 특별공제액	21,646	22,955	24,264	25,573	26,012	120,540
120만원 이하 구간 특별공제액	31,658	31,227	30,691	30,162	30,680	154,418
합계	53,304	54,182	54,955	55,735	56,692	274,868

(3) 소득세수 감소액 추계

앞에서 구한 각 년의 통신비 특별공제액에 2012~2016년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소득세수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다만 과세표준이 낮은 일부 근로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전체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정세액에서 제하여야 할 것이다.(과세표준이 30만원이라면, 통신비 소득공제 50만원을 신청하더라도 30만원 밖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면, 매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4~5억원 수준은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통신비 특별공제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은 2012년 5,341억원에서 2016년 5,681억원으로 연평균 1.59%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3-12> 통신비 특별공제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연평균)
통신비 특별공제액	53,304	54,182	54,955	55,735	56,692	274,858
실효세율	10.02%	10.02%	10.02%	10.02%	10.02%	—
소득세수 감소액	5,341	5,429	5,506	5,585	5,681	27,542
(증가율)	—	1.65	1.42	1.43	1.72	1.59

제2절 유료방송요금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¹⁰⁾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1)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value added)’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GNP형, 소득

10) 임상엽 · 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1.

형, 소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모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구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총소비액과 일치하며, 그것은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지대·이자·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2)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소비형)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나 주세와 구별된다.
-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제조 또는 소매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세와 구별될 뿐 아니라,가가 거래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세와 구별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며 그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크게 전단계거래공제법(직접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간접법)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

로, 우선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text{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입세액}(\text{매입액} \times \text{세율})$$

4)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이론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나 현실적으로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 및 계량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이다.

□관련법규 : 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우리나라의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건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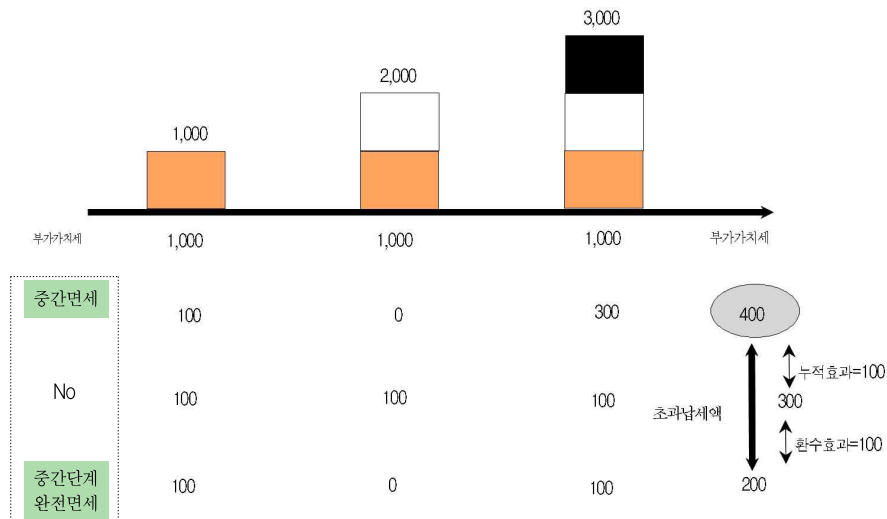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2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면세 채택에 따른 누적효과 발생여부

[그림 3-4]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중간 면세인 경우

- 총납세액(400) = 중간단계완전면세의 경우(200) + 초과납세액(200 = 누적효과 + 환수효과)
- 초과납세액(200) = 누적효과(100: No면세와 비교) + 환수효과(100: 초과 누적액)

1) 면세·영세율의 유통 중간단계 적용

위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중간단계에서 적용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간단계가 아닌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영세율과 면세에서 기대하지 않은 효과

최종단계에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영세율제도 및 면세제도가 본래부터 기대했던 효과이다. 그러나 유통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면

영세율 및 면세제도가 본래부터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주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주게된다. 따라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영세율과 면세에서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율과 면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효과이다.

3) 중간단계에 영세율 적용 시 환수효과 의미

중간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속단계에서 과세하면 ① 영세율단계와 ② 그 이전단계에 적용된 영세율의 효과가 그 후속단계에서 전부 환수되어 그 후속단계에서의 납부세액은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보다 많아지는데, 이를 환수효과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영세율의 효과를 전부 취소하고 영세율의 다음 단계[과세]에서 전액 징수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영세율에 의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영세율이 중간단계에 없는 것과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중간단계에 면세적용 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발생과 의미

중간거래단계에서 면세하고 그 후속거래단계에서 과세하면 ① 면세단계에서 면세한 세액이 환수되는 효과[환수효과]가 발생하고 ② ①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과 ③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이 누적[누적효과]되어 소비자에게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 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주고, 국고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세수를 귀속시키게 된다. 여기서 환수효과의 의미는 면세를 취소하고 그 다음 단계[과세]에서 징수함을 의미하고 누적효과의 의미는 면세전단계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면세 후 과세단계에서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과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을 누적하여 징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5) 영세율관련 환수효과와 면세관련 누적환수효과가 다른 이유

영세율관련 환수효과는 영세율의 효과를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이고, 면세관련 환수효과는 면세를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인데 영세율의 효과는 영세율단계와 그 이전단계에

대한 영의 세율이이고, 면세는 면세 당해 단계만 면세이므로 취소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면세의 누적환수효과는 면세관련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결합한 것이므로 영세율의 환수효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6) 면세·영세율의 유통 최종단계에서의 적용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쏠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액이 영이 되는 것이다. 즉, 영세율 前단계까지 전가되어 오던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단계에서 전액 환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가격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유통의 최종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 면제되는 것이고 면세이전 단계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단계의 면세는 최종단계의 영세율에 비하여 가격하락의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2. 면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케이블방송 수신료에 대한 면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면세 실시 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소비자, 공급자 및 국가(조세)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기본 가정을 한다.

판매가	10,000	매출부가가치세	1,000	비 고
매출원가	재료비 등 7,000	매입부가가치세	700	
	인건비 등 2,000	국가 세수 증가	300	
매출총이익	1,000	최종소비자부담 (구매금액)	11,000	

상기 재화(이하 “A재화”라 한다)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급자는 최종소비자에게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는 판매가 1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1,000원을 A재화를 구입하는데 지급한다.

공급자는 A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재료비, 인건비 및 간접제조비 등의 매출원가가 소요되는데, 이 매출원가를 재료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인건비

와 같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재료비 등은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1,000 - 700 = 300$ 원이다. 이는 곧 국가입장에서 세수증가액이다.

(1) 소비자의 오해 : 면세를 시행하면 1,000만큼 판매가가 하락한다?

A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면, 소비자는 공급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총 구매금액이 1,000원만큼 하락하여 10,000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면세 시행을 하면 공급자는 재화 가격을 1,000원 아니 300원만큼 인하하여 10,700원에 공급한다. 소비자는 면세 실시에 따른 1,000원만큼 국세가 감소되는데 이 중에 700원을 모두 공급자가 가져가고 소비자는 300원의 혜택만 받으므로 면세 실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오해는 우선 국가 세수 감소가 300원인데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A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공급자는 과세 적용 시 매출부가가치세가 1,000원이나 매입부가가치세가 700원이어서 순수하게 납부하는 금액은 300원이므로 면세 적용으로 납부하지 않는 금액은 300원이다. 따라서 공급자는 감소되는 납부세액 300원만큼 판매가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 면세 적용 전에는 국가세수는 공급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300원이며, 면세 적용 시 국가 세수 감소액 또한 300원이다. 면세 적용 시 국가 세수 감소를 총액으로 살펴보면, 매출 부가가치세 1,000원이 감소되나 매입세액공제 되었던 700원이 면세 적용으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국가 세수가 700원 증가한다.

[면세 적용 시 효과 : 공급자]

공급자	과세(①)	면세(②)	증분(=②-①)	
매출세액	1,000	—	△1,000	
매입세액	△700	—	700	
납부세액	300	—	△300	

[면세 적용 시 효과 : 국가 세수]

국가	과세(①)	면세(②)	증분(=②-①)	
매출세액	1,000	—	△1,000	
매입세액	△700	—	700	
국가세수증가액	300	—	△300	

따라서 과세 대상 재화를 면세 적용 시 판매가액이 매출부가가치세액인 1,000원 아니라 300원만큼 인하되는 것이 걱정된 것이므로, 면세 적용은 기업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소비자인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가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판매가가 하락하므로 그 혜택은 전부 소비자(국민)에게 돌아간다.

(2) 공급자의 오해 : 면세를 시행하면 가격인하 효과가 적어 소비자의 오해만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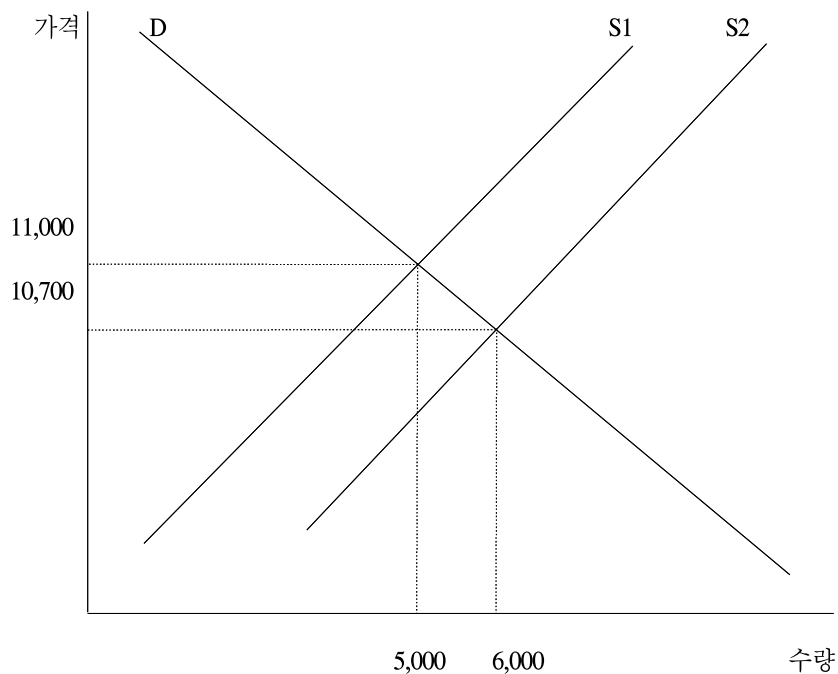
A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면, 공급자의 판매가 인하는 1,000원이 아니라 300원이 걱정된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A 재화에 대한 매출총이익이 과세 적용이나 면세 적용이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오해로 상품 및 기업 이미지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대한다.

구분		과세	면세	비 고
판매가		10,000	10,700	
매출원가	재료비 등	7,000	7,000	
	인건비 등	2,000	2,000	
매출총이익		1,000	1,700	
매입불공제VAT			△700*	
순매출총이익		1,000	1,000	

*공급자(기업) 입장에서는 재료비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 700원을 면세 적용 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 자산감소에 해당한다.

판매 단위당 순매출총이익은 동일하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급자(기업)의 판매량이 증가하여 기업의 전체 순매출총이익은 증가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면세를 실시하기 전 A재화가 과세 대상일 경우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11,000원(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으로, 판매가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이고 균형공급량은 5,000(가정)이다. 면세 적용을 한다면 A재화에 대한 세금부과가 감소하게 되고, 세금부과 감소는 기업에 입장에서 재화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와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급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11,000원에서 10,700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균형공급량은 6,000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판매단위당 순매출총이익은 동일하나 균형공급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 순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기업)가 면세 실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림 3-5] 면세실시에 따른 균형가격 및 균형공급량



(3) 국가의 오해 : 면세를 시행하면 국가 세수만 감소한다?

A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면, 국가 세수는 1,000원이 감소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300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문제는 국가 세수가 300원이라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정부)는 면세 적용을 반대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 세수 감소액 300원이 소비자(국민)의 부 300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의 변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재정 감소로 인한 효용감소보다 국민 부의 증가가 가져오는 국민의 효용 증대가 더 커 나라 전체적으로 최대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했듯이 면세 적용은 기업의 A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재료비 공급 산업 분야 성장의 후방효과와 A재화 광고 증대 등의 전방효과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결국 이러한 전·후방효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은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세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만을 이유로 반대할 이유 또한 없다.

3.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 필요성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분야를 크게 방송통신 서비스 창출단계, 서비스 유통 및 소비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세제 지원의 혜택과 대상이 가장 넓은 소비 단계의 세제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2012년 12월 31일 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과 2013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을 전면 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KBS, MBC 및 SBS 지상파 방송 외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 등장으로 시청자 대부분은 지상파 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및 케이블 유료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3> 2011년 우리나라 가구수

(단위 : 가입자 수)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17,379,667	3,531,424	4,043,612	3,640,592	4,608,655	1,242,634	312,751

<표 3-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 단자수)

연도	아날로그	디지털	계
2010	11,598,778	3,705,984	15,304,762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88.06%가 KBS, MBC 및 SBS 등의 정규 방송 외에 추가적으로 유료수신료를 지급하면서 종합유선방송 등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의 단체에서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 반박할 수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중 약 3분의 1을 평범한 가구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가구수 중에서 50.70%가 수신수신료를 부담하고 종합유선방송 등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케이블 방송 요금에 대한 면세를 실시할 경우 면세 혜택을 보는 가구는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방송통신 세제지원의 일차 목표로 종합유선방송 유료 수신료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 개정안

케이블방송 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세제 개선 방안 중 시청자에게 가장 넓은 혜택을 줄 있는 세제지원방안이다.

(1) 세제 지원 내용 :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케이블방송 요금

(2) 국내 제도 현황 : 부가가치세법 제12[면세]

- 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용역으로 구성
- ②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 신문잡지·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③ 순수 예술활동(작곡·연주활동 등), 음악과 관련된 용역(연출, 녹음 등) 등

(3) 개정 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현행(2011.11.1)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
1.~7.(생략)	1.~7.(현행과 같음)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케이블방송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18.(생략)	9.~18.(현행과 같음)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5. 세제지원 효과분석

위성방송 등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분석만 하였고,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수신료 가격 인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표 3-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 현황¹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비고
방송사업수익	1,789,131	1,928,473	
방송수신료수익	1,137,172	1,173,735	
광고수익	105,247	111,174	

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10

합쇼방송출수료수익	382,540	437,466	
기타방송사업수익	164,172	206,098	
기타사업수익	719,738	708,951	
영업수익	2,508,869	708,951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표 3-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 단자수)

연도	아날로그	디지털	계
2009	12,627,508	2,727,659	15,355,167
2010	11,598,778	3,705,984	15,304,762
계	24,226,286	6,433,643	30,659,929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수신료 수익 증감

<표 3-1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수신료 수익 증감¹²⁾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증감	109,490	59,882	36,563
증감률	11.3	5.6	3.2

총 가입자 수는 2009년보다 2010년에 감소하였으나 2009년 방송수신료 대비 2010년 방송수신료는 36,563백만원(비율로는 3.2%) 증가하였다.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단자당 수신료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면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1) 가정

- 종합유선방송사 가입자 수 : 2010년 가입자 수로 고정

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10

▪ 아날로그케이블요금 및 디지털케이블요금

구분	2009	2010	비고
방송사업수익	1,789,131	1,928,473	
방송수신료수익	1,137,172	1,173,735	
광고수익	105,247	111,174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382,540	437,466	
기타방송사업수익	164,172	206,098	
기타사업수익	719,738	708,951	
영업수익	2,508,869	708,951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아날로그케이블요금 월10,000원(단일요금제임), 디지털케이블요금 월 17,000원(3년 약정, 기본형)이다. 요금제, 가입자 수 및 수신료수익을 가지고 안분 계산하여 가입자 당 평균 수익인 ARPU(Average Revenue Per User)은 다음과 같고 ARPU를 아날로그케이블요금 및 디지털케이블요금으로 가정한다. ARPU는 삼덕회계법인의 2010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현황 수치로 한다.

(단위 : 원)

구분	ARPU	연평균 ARPU	비고
아날로그	7,749	92,988	
디지털	16,935	203,220	셋탑박스임대료 포함*1

*1. 디지털케이블방송요금의 ARPU가 아날로그케이블방송요금의 ARPU보다 2배이상 큰 이유는 디지털케이블방송 시청을 위해 필요한 셋탑박스의 임대료 5,000원(평균 임대료 가액임)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비율 및 수치

- 2012.12.31. 이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송출 전면 중단에 대한 홍보를 통한 디지털 방송 시청의 당위성 광고와 홍보로 향후 2년간은 디지털 전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전환 비율 추정은 다음의 각 시나리오 비율로 가정하고, 매년 디지털케이블 전환비율은 동일한 비율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한다.

3) 면세 적용 대상 및 시한

- 2012.01.01.부터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디지털방송 사업 지원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실시하고,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각 시나리오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시나리오 1] 2015년말에 디지털로 100% 전환

—매년 디지털 전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15년까지 매년 15.14%씩 디지털방송가입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에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100%가 된다고 가정한다.

◎ 디지털케이블 전환 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나리오3	아날로그	75.7	60.6	45.5	30.3	15.2
	디지털	24.3	39.4	54.5	69.7	84.8
	계	100	100	100	100	100

◎ 비율 추정에 따른 가입자 수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표로 2012년에 면세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2년부터 수치를 산정함

(단위 : 단자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아날로그	6,963,667	4,637,343	2,326,324	—
디지털	8,341,095	10,667,419	12,978,438	15,304,762
계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아날로그	647,475	431,185	216,290	—
디지털	1,695,058	2,167,747	2,637,389	3,110,078
계	2,342,533	2,598,932	2,853,679	3,110,078
세수감소액	234,253	259,893	285,367	311,007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2] 2017년말에 디지털로 100% 전환

—매년 디지털 전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17년까지 매년 10.81%씩 디지털방송가입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에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100%가 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2016년까지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과세 적용을 한다.

◎ 디지털케이블 전환 비율

(단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나리오2	아날로그	75.7	64.9	54.1	43.3	32.4	21.7	10.8
	디지털	24.3	35.1	45.9	56.7	67.6	78.3	89.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비율 추정에 따른 가입자 수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표로 2012년에 면세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2년부터 수치를 산정함

(단위 : 단자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날로그	8,279,877	6,626,962	4,958,743	3,321,134	1,652,915	—
디지털	7,024,885	8,677,800	10,346,019	11,983,628	13,651,847	15,304,762
계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날로그요금	769,847	616,138	461,034	308,813	153,616	—
디지털요금	1,427,417	1,763,339	2,102,514	2,435,185	2,774,156	3,110,078
계	2,197,264	2,379,477	2,563,548	2,743,998	2,927,772	3,110,078
세수감소액	219,726	237,947	256,354	274,399	292,777	311,007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함

[시나리오 3] 2019년말에 디지털로 100% 전환

—매년 디지털 전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19년까지 매년 8.41%씩 디지털 방송가입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9년에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100%가 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2016년까지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과세 적용을 한다.

◎ 디지털케이블 전환 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나리오3	아날로그	75.7	67.3	58.9	50.5	42.1	33.7	25.3	16.9	8.5
	디지털	24.3	32.7	41.1	49.5	57.9	66.3	74.7	83.1	9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비율 추정에 따른 가입자 수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표로 2012년에 면세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2년부터 수치를 산정함

(단위 : 단자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날로그	9,014,505	7,728,905	6,443,305	5,157,705	3,872,105	2,586,505	1,300,905	—
디지털	6,290,257	7,575,857	8,861,457	10,147,057	11,432,657	12,718,257	14,003,857	15,304,762
계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15,304,762

◎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날로그	838,193	718,611	599,121	479,539	360,049	240,466	120,884	—
디지털	1,278,253	1,539,391	1,800,732	2,062,073	2,323,211	2,584,551	2,845,689	3,110,078
계(면세)	2,116,446	2,258,002	2,399,853	2,541,612	2,683,260	2,584,551	2,845,689	3,110,078
세수감소액	211,644	225,800	239,985	254,161	268,326	258,455	284,568	311,007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하고, 2017년부터는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신료는 과세 대상임

4) 제조업(방송업)자가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를 반영한 세수감소 효과

①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불공제 비율

유선방송에 대한 요금을 면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 전환에 따른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면세 전환 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된 부분만큼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셈이다. 국가 수입이 증가되는 매입세액불공제액이 매출세액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케이블방송의 대표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수신료수익(매출)¹³⁾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주)티브로드 기납방송	(주)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주)씨앤엠경기 케이블티브	
방송수신료수익	37,487	13,033	25,417	
매출세액	3,748	1,303	2,54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매출이 큰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영업수익 중 방송수신료수익 부분만 발취함

<표 3-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요경비(매입)¹⁴⁾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주)티브로드 기납방송	(주)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주)씨앤엠경기 케이블티브	
방송제작비	1,106	117	569	
프로그램사용료	9,321	4,382	6,469	
전송망사용료	5,357	-	1,374	
광고선전비	63	87	426	
판매촉진비	6,553	1,168	1,114	
지급수수료	4,506	2,577	6,536	
계	26,906	8,331	16,488	
매입세액	2,690	833	1,648	

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11

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11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같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비는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위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한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의 비율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공제 비율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지에스 강남방송	(주)씨엔엠경기 케이블티브	
매출세액(①)	3,748	1,303	2,541	
매입세액(②)	2,690	833	1,648	
비율1(=②/①*100)	71	64	64	
비율2(=②/①*10)	7.1	6.4	6.4	

*‘비율2’는 방송수신료 수익이 과세대상일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율 10% 중 매입세액 공제받는 부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며, 방송수신료 수익에 대한 면세 전환 시 매입세액불공제율을 나타냄

② 매입세액불공제율 가정

위 표에서 보듯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 부가가치세율 10% 중 매입세액불공제율은 약 6%~7%로 확인되나 계산의 편의상 7%로 가정함

매입세액불공제율 7%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 수신료수익을 면세로 전환 시 세수 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2015년말에 디지털로 100% 전환

<표 3-21>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5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아날로그요금	647,475	431,185	216,290	-
디지털요금	1,695,058	2,167,747	2,637,389	3,110,078
계	2,342,533	2,598,932	2,853,679	3,110,078
세수감소액	234,253	259,893	285,367	311,007

매입세액불공제율	7%	7%	7%	7%
실질적 세수감소액	70,275	77,967	85,610	93,302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함

*매입세액불공제율은 케이블요금을 면세 적용시 케이블서비스를 제고하는 업체는 케이블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기존 과세시 매출 부가가치세 10%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비율임

$$*실질적\ 세수감소액 = \text{세수감소액} \times \frac{(10\% - 7\%)}{10\%}$$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 면세되며, 매출 대비 10%가 세수감소로 연결되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므로, 이 둘의 효과를 가감하여야만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시나리오 2] 2017년말에 디지털로 100%전환

<표 3-22>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7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날로그요금	769,847	616,138	461,034	308,813	153,616	—
디지털요금	1,427,417	1,763,339	2,102,514	2,435,185	2,774,156	3,110,078
계	2,197,264	2,379,477	2,563,548	2,743,998	2,927,772	3,110,078
세수감소액	219,726	237,947	256,354	274,399	292,777	311,007
매입세액불공제율	7%	7%	7%	7%	7%	7%
실질적 세수감소액	65,917	71,384	76,906	82,319	87,833	93,302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함

*매입세액불공제율은 케이블요금을 면세 적용 시 케이블서비스를 제고하는 업체는 케이블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기존 과세 시 매출 부가 가치세 10%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비율임

$$*실질적\ 세수감소액 = \text{세수감소액} \times \frac{(10\% - 7\%)}{10\%}$$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 면세되며, 매출 대비 10%가 세수감소로 연결되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므로, 이 둘의 효과를 가감 하여야만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시나리오 3] 2019년말에 디지털로 100% 전환

<표 3-23> 면세대상 수신료수익 및 세수 감소 효과(2019년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날로그	838,193	718,611	599,121	479,539	360,049	240,466	120,884	—
디지털	1,278,253	1,539,391	1,800,732	2,062,073	2,323,211	2,584,551	2,845,689	3,110,078
계(면세)	2,116,446	2,258,002	2,399,853	2,541,612	2,683,260	2,584,551	2,845,689	3,110,078
세수감소액	211,644	225,800	239,985	254,161	268,326	258,455	284,568	311,007
매입세액불공제율	7%	7%	7%	7%	7%	7%	7%	7%
실질적 세수감소액	63,493	67,740	71,995	76,248	80,497	77,536	85,370	93,302

*월 ARPU를 통해 연평균 수익을 각 단자수 당 아날로그케이블요금 92,988원, 디지털케이블요금 203,220원으로 가정함

*매입세액불공제율은 케이블요금을 면세 적용 시 케이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케이블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기존 과세 시 매출 부가가치세 10%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비율임

$$\text{*실질적 세수감소액} = \text{세수감소액} \times \frac{(10\% - 7\%)}{10\%}$$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 면세되며, 매출 대비 10%가 세수감소로 연결되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므로, 이 둘의 효과를 가감 하여야만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6) 소비자가 받는 면세 효과

- ① 면세로 인한 효과 생산자 출하가격이 일반적으로 6~7%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감쇄효과를 제외하면 약 4~3%정도 하락되므로 다음과 같은 소비자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간다.

구분	ARPU(과세)	가격인하액	연 가격인하	
아날로그방송	7,749	232	2,784	
디지털방송	16,935	508	6,096	

- ② 만약 제조업자가 생산출하가격을 5% 인상 시 면세로 인한 수혜자는 제조업자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2009년 당시 기저귀 면세 전환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기저귀의 생산자 출하가격이 면세 전환 이후 인상된 것은 제조원가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기저귀 면세 효과

아래의 예에서 확인되는 것 같이, 면세 시행 전 가격 22,500원이 면세 시행 이후 22,000원으로 500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였다.

－면세의 효과를 사업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에 대한 변

2009.1.1.부터 부가가치세 10% 면세 중 면세사업자 전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율이 약 7%이므로 출고가 할인은 3%이다. 22,500원 납품하던 모회사 기저귀 값이 2009년 출산장려와 가계비절감 목적의 면세가 시행된 후 22,000원으로 500원 (2.22%) 하락하였다. 이는 면세효과를 거의 가격하락으로 반영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 2010년 3월에 25,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당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제조원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관련 없는 인상이다.

7) 면세에 기반한 방송통신산업 고도화에 의한 세수증가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를 실시할 경우 국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면세 등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고도화에 따른 방송통신산업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극히 적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면세 실시에 의한 부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세 주 대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 실시를 통해 유료방송 수신료 하락에 의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방송 전면 송출 실시 등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는 SOI⁵⁾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체매출액 증가 및 유료채널수신료 수익 증가 등 수익구조 개선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세 증가가 예상된

다.

다음 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PP¹⁶⁾ 사업자별 수입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 비율이 22.7%밖에 안 되지만 매출 증가 추세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의 2배 넘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표 3-24> PP 사업자별 수신료 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증감	증감률
수신료 수입	277,853	356,977	411,314	54,337	15.2%
디지털 전환율	12.7%	17.8%	22.7%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과와 케이블방송 등의 유료방송사업자 수신료 면세가 시행될 경우 더욱 매출증가 및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증가 및 수익구조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면세 실시로 수신료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되나, 앞서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 시행에 따른 국가 재정 감소 분석 시 했던 가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2019년까지 변동 없다고 본다.

◇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3%로 가정

케이블방송 수신료 면세로 인하여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 관점에서 2010년 사업년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인 3%(아래 손익계산서 표 참조)가 앞으로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15) SO(SO: 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

16) PP(PP: Program Provider 유료방송중소채널사용사업자)

<표 3-25> 2010년 사업년도 종합유선방송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비율
영업수익	2,362,761	2,508,869	2,637,424	100.0%
영업비용	1,952,452	2,077,201	2,201,296	83.5%
영업손익	412,310	431,668	436,128	16.5%
영업외수익	249,420	167,625	155,473	5.9%
영업외비용	475,308	267,763	167,702	6.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86,422	331,530	423,899	16.1%
법인세	19,686	50,900	77,628	3.0%
당기순이익	166,736	280,630	346,271	13.1%

◇ 디지털 전환 비율을 2019년까지 100% 될 것으로 가정

위의 가정들 조건 하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면세 실시에 따른 법인세 증가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6> 면세 실시 후 법인세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날로그	838,193	718,611	599,121	479,539	360,049	240,466	120,884	—
디지털	1,278,253	1,539,391	1,800,732	2,062,073	2,323,211	2,584,551	2,845,689	3,110,078
매출	2,116,446	2,258,002	2,399,853	2,541,612	2,683,260	2,825,017	2,966,573	3,110,078
법인세 비율				3%				
법인세	63,493	67,740	71,995	76,248	80,497	84,750	88,997	93,302

*아날로그방송의 ARPU는 연 92,988원, 디지털방송의 ARPU는 연 203,220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에도 매출 및 법인세는 전년대비 매년 2%씩 증가된다고 가정한다.

② 방송광고 수입 증가 예상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 부활 및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사업자 수익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수입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방송광고 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상 광고는 신문광고이든 방송광고이든 과세대상임) 및 법인세 세수 증가로 연결된다.

방송광고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방송광고 매출 증가율

종합유선방송 2010년 광고수익은 111,200백 만 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방송광고 매출 증가율 또한 전년대비 매년 5.7%로 가정한다.

◇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7%로 가정

케이블방송 수신료수익 부분에 있어 프로그램 사용료가 14.5%로 매우 커 매출 대비 비용이 큰 편이나 광고수익 부분에 있어 프로그램 사용료와 같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없어 매출 대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따라서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을 7%로 가정한다.

위의 가정들 조건 하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면세 실시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내역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7> 방송광고 매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광고매출	124,238	131,319	138,804	146,716	155,079	163,919	173,262	183,138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	12,423	13,131	13,880	14,671	15,507	16,391	17,326	18,313
법인세 비율	7%							
법인세	8,696	9,192	9,716	10,270	10,855	11,474	12,128	12,819
계	21,119	22,323	23,596	24,941	26,362	27,865	29,454	31,132

③ 홈쇼핑 등 송출수수료 증가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와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에 따라 홈쇼핑 채널 시청자수의 증가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받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8> SO 및 위성의 송출수수료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비고
SO	238,600	298,000	339,700	385,400	
위성	13,000	14,400	14,800	16,200	
계	251,600	312,400	354,500	401,600	
매출증가율		24.9%	13.4%	13.2%	
디지털 전환율	1.8%	5.9%	12.7%	17.8%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송출수수료 매출 증가율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송출 수수료 증가율이 평균 19.8%이며, 2007년 경우는 전년대비 24.9%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감소 추세가 주춤하였으나 매출 증가율 하락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점과 최근 5년간의 한국 경제성장률과 2012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3.8%(OECD 예상수치)를 고려하면 송출수수료 매출은 증가하나 매출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의 단순화를 위해 내년 한국 예상 경제성장률의 약 2배인 7%를 매년 송출수수료 매출 증가율로 가정한다.

◇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5%로 가정

위의 가정들 조건 하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면세 실시에 따른 송출 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내역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9>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송출수수료	491,977	526,415	563,264	602,693	644,881	690,023	738,325	790,007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	49,197	52,641	56,326	60,269	64,488	69,002	73,832	79,000
법인세 비율	5%							
법인세	24,598	26,320	28,163	30,134	32,244	34,501	36,916	39,500
계	73,795	78,961	84,489	90,403	96,732	103,503	110,748	118,500

8) 면세 세제지원의 효과 종합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면세(디지털방송 수신료는 반영구, 아날로그방송 수신료는 2016년까지 면세 적용)를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면세 등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고도화에 따른 방송통신산업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2019년도부터 국가 재정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0> 면세 세제지원의 종합적인 효과(아날로그방송은 2017년 과세부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수(VAT) 감소액	63,493	67,740	71,995	76,248	80,497	77,536	85,370	93,302
법인세증가	4,252	8,499	12,755	17,004	21,254	25,507	29,753	34,058
방송광고증가에 의한 세수증가	1,139	2,243	3,616	4,916	6,382	7,885	9,474	11,152
송출수수료 증가에 의한 세수증가	4,827	9,993	15,521	21,435	27,764	34,535	41,780	49,532
순 세수효과	△53,275	△47,005	△40,103	△32,893	△25,097	△9,609	△4,363	+1,440

*디지털방송 가입자 전환을 2019년까지 100% 달성할 경우를 가정

*법인세증가는 2011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증분 금액에 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날로그	957,776	838,193	718,611	599,121	479,539	360,049	240,466	120,884	—
디지털	1,016,912	1,278,253	1,539,391	1,800,732	2,062,073	2,323,211	2,584,551	2,845,689	3,110,078
매출	1,974,688	2,116,446	2,258,002	2,399,853	2,541,612	2,683,260	2,825,017	2,966,573	3,110,078
증분		141,758	283,314	425,165	566,813	708,461	850,218	991,774	1,135,279
법인세증분		4,252	8,499	12,755	17,004	21,254	25,507	29,753	34,058

*방송광고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광고매출	117,538	124,238	131,319	138,804	146,716	155,079	163,919	173,262	183,138
				10%(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11,753	12,423	13,131	13,880	14,671	15,507	16,391	17,326	18,313
				7%(법인세 비율)					
법인세	8,227	8,696	9,192	9,716	10,270	10,855	11,474	12,128	12,819
계	19,980	21,119	22,323	23,596	24,941	26,362	27,865	29,454	31,132
증분		1,139	2,243	3,616	4,961	6,382	7,885	9,474	11,152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송출수수료	459,791	491,977	526,415	563,264	602,693	644,881	690,023	738,325	790,007
				10%(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45,979	49,197	52,641	56,326	60,269	64,488	69,002	73,832	79,000
				5%(법인세 비율)					
법인세	22,989	24,598	26,320	28,163	30,134	32,244	34,501	36,916	39,500
계	68,968	73,795	78,961	84,489	90,403	96,732	103,503	110,748	118,500
증분		4,827	9,993	15,521	21,435	27,764	34,535	41,780	49,532

제3절 기타 세제 개선 방안

1.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

(1) 현행 기부금관련 규정

1) 법인세법

① 법정기부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중 다음의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ext{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text{차가감소득금액} + \text{법정기부금} + \text{지정기부금} - \text{이월결손금}) \times 50\%$$

이때의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지정기부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다음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ext{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text{차가감소득금액} + \text{법정기부금} + \text{지정기부금}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times 10\%$$

③ 비지정기부금

세법에서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산입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① 법정기부금한도액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②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금액}(\text{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text{법정기부금}] \times 100\text{분의 } 10 + \text{MIN}[(\text{종합소득금액} - \text{법정기부금}) \times 100\text{분의 } 20, \text{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이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법정기부금}] \times 100\text{분의 } 10$$

2)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에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공익방송인 KBS 등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기부금대상에 포함시켜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디지털 전환 관련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 면세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 ①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②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 ③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④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⑤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⑥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⑦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⑧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⑪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⑫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
- 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⑭ 임산물 중 목재펠릿

(2)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과 지상파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만큼 디지털방송 전환과 활성화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세법중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목적중 하나가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유선방송 디지털 전환을 간접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관련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범위에서 제외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20%, 25%)만큼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다음 ①과 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① 초과금액 × (위 ①부터 ③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20%

② 초과금액 × (위 ④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5%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제외대상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④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방송수신료(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IPTV 사업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⑧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⑪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⑫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 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범위에 포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제외대상에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텔레비전방송수신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를 포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급증하는 방송통신비의 경감을 위해서 간접적인 세제지원방안으로써 전화료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송신기 구입시 관세면제 등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경감 및 면제 규정

1) 관세의 경감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가.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다.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세 등의 면제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중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 부터 제2호의 5까지 및 제3호의 사업

에 필요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2)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위해 구입하는 송신기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등

1) 방송법 제54조

① 한국방송공사의 업무

가. 라디오방송의 실시

나.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다.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라.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마.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사.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아.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자.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차.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카.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 국가는 위의 한국방송공사업무중 마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방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법 제54조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송신기 등 관세 면제 등

방송법 제54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규정만 보더라도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송신기 등에 대한 관세 경감 및 면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규정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② 첨단기술설비

③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④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⑤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⑥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위의 1에서 4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극리고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③ 산업재해 예방시설
- ④ 광산보안시설
-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 ⑦ 기술유출 방지설비
- ⑧ 해외자원 개발설비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2)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우리나라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경오염, 도시개발, 자연훼손 등에 따른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되어 재난이 대형화, 집중화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시설의 대형화·집중화·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및 생활공간의 밀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 취약 구조도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테러, 무력시위, 파업,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난 예측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재난관리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재난관리 혁신과 재난관련 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방송통신 재난관련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련 투자를 유도 하고 촉진함으로써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7) 김사혁, 최상훈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 방안 연구” 2010.

제4장 세제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장에서는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세제지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세적용과 소득공제항목 신설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조사방법 및 내용

방송통신분야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 조사기간 : 2011.10.20~2011.11.30
- 조사대상 : 일반인 126명(총 150명 조사 중 126명 답변함)
- 조사방법 : 직접 방문 상담

2. 조사 결과

(1) 사업운영관련 조세 및 부담금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방송통신요금이 부담에 대하여는 ‘크다’가 52.38% ‘매우 크다’가 15.08%, 보통이다가 27.78%로 총 95.24%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4-1> 방송통신료에 대한 부담정도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매우크다	19	15.08
크다	61	52.38
보통	35	27.78

한편, 각 가정의 월평균 방송통신비(유선방송료, 이동통신비 포함)는 월 10만 원 이상인 가정이 54.76%로 전체 가정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월 평균 방송통신비 부담액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3만원 미만	2	1.59
3만원~5만원	7	5.56
5만원~7만원	15	11.9
7만원~10만원	33	26.19
10만원 이상	69	57.76

한편, 방송통신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인가에 대한 견해는 매우 동의함이 25.4%, 동의함이 51.59%, 보통이다가 20.63%로 97.62%로 절대 다수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방송통신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매우 동의함	32	25.4
동의함	65	51.59
보통	26	20.63
동의하지 아니함	3	2.38
전혀 동의하지아니함	0	0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인 지에 대한 견해는 28.57%가 매우 그렇다, 42.86%가 그렇다, 21.43%가 보통이다로 대답했다. 즉, 92.85%가 방송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표 4-4>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매우 동의함	36	28.57
동의함	54	42.86
보통	27	21.43
동의하지 않음	7	5.56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1.59

(2) 조세지원의 필요성

방송통신비가 다른 가계지출(식료품, 도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등)처럼 조세지원(면세, 소득공제)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39.68%가 매우 그렇다, 41.27%가 그렇다, 10.32%가 보통이다 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91.2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매우 동의함	50	39.68
동의함	52	41.27
보통	13	10.32
동의하지 않음	10	7.94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0.79

(3) 면세에 대한 견해

1) 조사방법

현행 세법상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항목인 소금, 연탄, 기저귀, 신문과 방송통신비를 비교하여 가장 면세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항목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주로 국민생활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면세적용되는 항목 중에는 소금과 연탄, 최근에 면세항목으로 추가된 기저귀, 그리고 문화관련 재화 용역 중에서는 신문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표 4-6> 방송통신요금의 면세적용 필요성에 대한 타 면세항목과의 우선순위

순위	비교항목				
	소금	연탄	기저귀	통신비	신문
1위	15	23	34	51	3
2위	23	21	39	19	23
3위	43	20	28	18	17
4위	24	35	12	28	28
5위	21	27	13	10	55
백분율	11.9%	18.25%	26.98%	40.48%	2.38%
	18.25%	16.67%	30.95%	15.08%	18.25%
	34.13%	15.87%	22.22%	14.29%	13.49%
	19.05%	27.78%	9.52%	22.22%	22.22%
	16.67%	21.43%	10.32%	7.94%	43.65%
표본수	126	126	126	126	126

2) 결과

결과적으로 통신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응답자가(방송통신비를 1위로 선정) 40.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기저귀를 가장 우선적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응답자가 26.98%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2월부터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기저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방송통신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미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소금, 연탄, 신문 보다도 응답자들은 통신비가 더 우선적으로 면세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부가가치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국민의 세무담을 경감시켜주고 세부담의 역진성완화를 위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소금과 연탄보다도 더 많은 응답자가 통신료에 대하여 면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유아용기저귀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저귀를 최우선으로 면세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26.98%)보다 통신료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면세를 적용해야한다고 응답자들(40.48%)이 오히려 많다는 것은 방송통신

료 면세 적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소득공제에 대한 견해

1) 조사방법

현행 세법상 이미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항목인 보험료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의료비소득공제, 장기주식매입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신비를 비교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표 4-7> 방송통신서비스의 소득공제 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10				
	보험료	연금	의료	통신비	장기주식
1	14	9	74	23	6
2	40	27	29	18	12
3	38	44	15	20	9
4	21	39	4	33	29
5	13	7	4	32	70
백분율	11.11%	7.14%	58.73%	18.25%	4.76%
	31.75%	21.43%	23.02%	14.29%	9.52%
	30.16%	34.92%	11.9%	15.87%	7.14%
	16.67%	30.95%	3.17%	26.19%	23.02%
	10.32%	5.56%	3.17%	25.4%	55.56%
표본수	126	126	126	126	126

2) 결과

통신비는 의료비소득공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통신료가 보험료와 연금, 장기주식의 소득공제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소득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일상생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의료비소득공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보험료, 연금,

장기주식에 대한 소득공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소득공제해줘야 한다는 설문조사결과는 방송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사항이고 방송통신요금이 소득공제항목 추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서 연 4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다시 연 3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월 10만 원(연 120만 원 한도)의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항목으로 추가할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새로운 소득공제의 추가는 국가 재정수입감소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대체안으로 기존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만 원 줄이고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의 추가를 제안한 것이다.

<표 4-8>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항목추가에 대한 동의여부(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축소)

구분(n=126)	빈도수	퍼센트(%)
매우 동의함	28	22.22
동의함	53	42.06
보통	27	21.43
동의하지 아니함	12	9.52
전혀 동의하지아니함	6	4.76
합계	126	100

설문조사 결과 매우 동의함이 22.22% 동의함이 42.06%로 조사자의 64.28%가 기존의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방송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의 추가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제5장 세수감소효과에 대한 재정확보방안

제1절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축소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다음 ①과 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 ① 초과금액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 ② 초과금액 × (제1항 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5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제외대상

-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④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

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방송수신료(「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IPTV법에 의한 IPTV사업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⑧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⑪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⑫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책적 효과

아래표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2007년은 전년대비 29%, 2008년은 64%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 와서 공제금액이 1조 1,869억원으로 증가율이 17%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은 2011년말 기준 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문제가 가장 큰 해결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도입한 주요한 정책적 목적이 과세표준양성화에 있다고 한다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증가율이 감소하므로 정책적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현한국경제의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신용카드사용권장을 통한 정책목적달성방법은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현황(2006~2009)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	공제금액	공제금액증가율
2006	226,560	480,535	—
2007	290,964	621,030	29%
2008	374,814	1,018,725	64%
2009	375,260	1,186,906	17%

자료 : 국세청

제2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재검토

소득세법 제51조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2006.12.30 신설)]

1. 현행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규정

(1) 주택담보노후연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것

(2) 공제금액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공제현황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근 3년간 소득공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0>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신고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인원	1	2	2
소득공제액	1	5	3

자료 : 국세청 2010년 국세통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산출세액까지 산출현황”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3년간 소득공제대상인원과 소득공제금액을 보면 소득공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해 소득공제규정의 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현재 우리의 생활이 디지털 스마트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재가 되어버린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TV 등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최첨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송통신산업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창의성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획·개발의 중요도가 크고 투자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로 영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책으로 제3장 1절에서는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2절에서는 유료방송요금에 대한 면세를 세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과 2013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을 전면 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KBS, MBC 및 SBS 지상파 방송 외 다양화 케이블 방송 채널 등장으로 시청자 대부분은 지상파 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요금에 대한 면세를 실시할 경우 면세 혜택을 보는 가구는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방송통신 세제지원의 일차 목표로 종합유선방송 유료수신료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케이블 방송수신료에 대한 면세는 세제개선방안 중 시청자에게 가장 넓은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선방송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였을 때 세수감소효과와 수신료 가격인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면세 적용 시 일시적으로 세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면세로 인하여 방송통신산업의 고도화에 의한 매출증가 및 수익구조개선에 따라 법인세증가와 유료 방송사업자의 광고수입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증가와 법인세 증가, 홈쇼핑 등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법인세 증가로 인하여 추후 2019년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료에 대한 면세로 인한 방송통신료의 가격인하 효과에 대하여도 충분히 가격인하효과가 있음을 비슷한 사례인 기지귀면세전환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분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방송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연 120만 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았다.

통신비 특별공제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은 2012년 5,341억원에서 2016년 5,681억원으로 연평균 1.59%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방송통신료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세원 감소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세원감소의 대안으로서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로 축소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64.28%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저축소득공제 못지않게 방송통신요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방송통신요금의 면세적용과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에 대한 재정책보방안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의 2) 항목의 축소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51조의 4)의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가입자는 2011년 10월 말 현재 5,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유선방송이용자 수는 1,530 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 서비스 지출은 13만 6,682원(이중 이동전화 요금 지출이 10만 3,370원)으로 가계소비지출의 7%를 차지한다. 식비와 학원비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방송통신분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 크다는 것은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제상 지원책으로 유료방송요금에 대한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면세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모두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방송통신료 부담도 경감하며 국가의 재정도 증대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최초의 세제관련 연구로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후속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바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부족이라는 문제와 함께 방송통신분야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제지원안으로 방송통신료의 소득공제와 유료방송료에 대한 면세에 국한해서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효과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어쩔 수없이 많은 가정 하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세제지원 안에 대하여는 국가, 소비자, 기업의 3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처음에는 국가 재정 감소를 가져오지만 세제지원이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 매출 증가에 의한 국가 재정 증가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의 지원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다. 일단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많고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위주로 찾아보았지만 본 연구에서 세제지원책으로 제시한 유료방송료면세와 방송통신료소득공제와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다. 각 나라마다 조세정책이 많이 다르고 따라서 세법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추후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 분석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방송통신분야의 FTA 등 신자유무역시대에 통상 마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인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못하였고 간접적인 지원책인 조세지원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국제간 무역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는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방송통신산업은 IT와 접목되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차적으로 소비 단계의 세제 지원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분석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3절 방송통신분야의 세제지원의 제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제안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디지털요금에 대한 방송통신비 소득세 항목별 추가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하여만 연구하였다. 방송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1.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 방송을 위한 송신기 구입시 관세 면제

관세법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는 용품 등에 대해 일부 그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KBS가 방송법 제54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해 구입하는 송신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경감 받고 있지 않다. 이에대한 관세 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시: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2. KBS, 공공채널, 방송통신발전 기금 관련 출연 및 기부금 지출시 특례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현행 소득세법은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해 방송통신분야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없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KBS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원

책이 없다.

KBS, 공공채널, 방송통신발전 기금 관련 출연 및 기부금을 정 또는 특례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재난관련 투자비용을 지출한 경우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관련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관련 투자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4. 방송통신콘텐츠 육성을 위한 이자·배당 비과세

녹색산업 관련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녹색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녹색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2012.12.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이와 비교하여 방송통신분야 콘텐츠 산업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는 비과세 적용 시 실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와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방송사업자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문사업소의 경우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는 지방세 공제·감면이 전혀 없어 과세형평을 위해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및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의 신용카드지출 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2002.12.30 제목개정)]에 따른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텔레비전 시청료 및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와 같이 공과금 성격으로 제외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및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TV수신료는 공과금으로 보기 보다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TV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포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동전화요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1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10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201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 세제 개선 방안 연구□, 2007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비전□, 2007
- 한국조세연구원,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200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계통신비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과 주요통계관리□, 200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녹색성장 전략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 200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 방안 연구□, 2010
- 김경환·김종석(역, 2002),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 김성원(1988), □부가가세 과세 특례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용훈(1996),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유호 법인세율을 통한 분석□, 세무학 연구
- 김정훈(20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인(1980), □재정학□, 경문사.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조세 통계 자료 시스템.
- 삼일총서(2011), 삼일회계법인.
- 서희열·권성수(2000), □부가가세 면세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계산서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5집
- 이준구(2000), □재정학□, 다산출판사
- 정재호(2001),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 월간재정포럼 6월, 제60호
-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 김승래(2008)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중정의 경제적 효과□, 조세연구 8-1집

송민정(2010), “스마트TV로의 진화에 따른 미디어시정 영향 및 시사점”. 「스마트TV세미나 2010」 발표자료, 2010. 6. 25.

황준호(2010), “스마트TV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remium Repor>, 제 10-03호, 2010. 8. 23.

최병환(2010), “디지털케이블의 N-Screen 전략”, 「스마트폰－스마트TV, N-Screen 시대의 생존방안」 발표자료, 2010. 10. 6.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10), □201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조세제도 미국 편 Tax System of Selected Countries

2. 웹사이트 문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http://www.kisdi.re.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kipf.re.kr>)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부록>

[방송·통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방송·통신 분야의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방송·통신 분야의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가 생활에 미치는 정도와 방송·통신비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에 반영되어 방송·통신 분야의 세제지원 방안 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본 설문지의 인적사항은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연구결과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 조사자 : 「방송·통신 분야의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의 연구자 추현재

I. 다음 질문의 해당사항에 √, ○ 표시 또는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1. 성별은? ()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이하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이상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② 전문직 ③ 일반사무직 ④ 기술직
⑤ 유통/서비스업 ⑥ 공무원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기타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방송·통신비(이동통신료, 통신기기, 케이블방송료 등)는 얼마입니까?()

- ① 3만원미만
② 3만원이상 ~ 5만원미만
③ 5만원이상 ~ 7만원미만
④ 7만원이상 ~ 10만원미만
⑤ 10만원이상

7. 귀하 가정의 가계지출에 있어서 방송·통신비(이동통신비, 케이블요금 등)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5. 방송·통신산업(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이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견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보통
④ 동의하지 않음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 방송·통신서비스(이동통신전화, 케이블방송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견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동의함 ② 동의함 ③ 보통
④ 동의하지 않음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 방송·통신비가 다른 가계지출(식료품, 도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등)처럼 조세지원(면세, 소득공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다음 가계지출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를 []에 적어주세요.

(“1” 가장 필요함, “2” 그 다음으로 필요함, …, “5” 가장 필요없음.)

[] 소금

[] 연탄과 무연탄

- ☐ 기저귀
- ☐ 방송·통신비
- ☐ 신문·잡지 구독료

10. 다음 가계지출 중 종합소득공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를 적어주세요.

(질문5과 동일한 방식으로 ☐ 칸에 1~5까지 순위를 적어주세요.)

- ☐ 보장성보험료
- ☐ 연금저축
- ☐ 의료비
- ☐ 방송·통신비
- ☐ 장기주식형저축

11. 현행 종합소득공제항목 중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연400만원)를 100만 원 감소시키고 방송·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연120만원한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 | |
|-----------|--------------|------|
| ① 매우 동의함 | ② 동의함 | ③ 보통 |
| ④ 동의하지 않음 |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저 자 소 개 ●

추 현 재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서강대 경영학과 석사
- 현 세무법인한솔신도림지점 대표세무사
- 세무사
- 미국공인회계사

박 지 혜

-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 현 박지혜법무사사무실 대표법무사
- 법무사

이 경 천

- 세종대 회계학과 졸업
- 현 이경천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세무사

정 성 윤

- 연세대학교 졸업
- 공인회계사

정책연구용역 지정 2011-27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의

방송통신분야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새로운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2011년 12월 15일 인쇄

2011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

E-mail :

Homepage:

인 쇄 (주)영화조세통합
